

2025 SEP

함께 만드는 미래  
FUTURE  
IDEAL CITY  
용인르네상스

# 도시정책소식지

VOL.18  
도시기획단



주주총회  
2025년 9월 15일  
용인르네시

|                                                                                                                                                                                                                                                                                                                    |          |
|--------------------------------------------------------------------------------------------------------------------------------------------------------------------------------------------------------------------------------------------------------------------------------------------------------------------|----------|
| <b>1. 중앙부처 동향</b>                                                                                                                                                                                                                                                                                                  | ----- 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편리한 일상과 혁신산업 성장을 함께!</li> <li>○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li> <li>○ 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도시의 변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li> <li>○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li> <li>○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첫 공급 개시</li> <li>○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 된다.“2025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li> </ul> |          |
| <b>2. 정부출연 연구기관 동향 &lt;국토연구원&gt;</b>                                                                                                                                                                                                                                                                               | ----- 3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li> </ul>                                                                                                                                                                                                                                           |          |
| <b>3. 입법 예고</b>                                                                                                                                                                                                                                                                                                    | ----- 4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i> <li>○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li> </ul>                                                                                                                                                                                  |          |
| <b>4. 경기도 동향</b>                                                                                                                                                                                                                                                                                                   | ----- 4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민간 복합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li> <li>○ 경기도, 용인·고양에서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개최</li> <li>○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li> <li>○ 경기도, 수원·용인·GH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li> </ul>                                                                             |          |
| <b>5. 용인시 동향</b>                                                                                                                                                                                                                                                                                                   | ----- 5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특례시의 새로운 도시 상징물(CI·BI 통합형) 선호도 조사 진행</li> <li>○ 용인특례시, 28년 만의 새 얼굴 통합 도시브랜드 선포</li> <li>○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정식 서비스 시작</li> <li>○ 용인특례시, GTX-A 구성역 보행 안전 시설 완료공기질 개선 조치</li> </ul>                                                                                 |          |
| <b>6. 용인시정 연구원 이슈 리포트</b>                                                                                                                                                                                                                                                                                          | ----- 5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100 대응을 위한 반도체 도시 용인의 지속가능 에너지 전략</li> </ul>                                                                                                                                                                                                                            |          |
| <b>7. 도시기획단 소식</b>                                                                                                                                                                                                                                                                                                 | ----- 8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경관·공공디자인 분야 실무 역량 강화 교육</li> <li>○ 공공디자인팀 수상 2관왕,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사업부분 학회장상</li> </ul>                                                                                                                                                                          |          |
| <b>8.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b>                                                                                                                                                                                                                                                                                 | ----- 83 |

# 1. 중앙부처 동향 <국토교통부>

## □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편리한 일상과 혁신산업 성장을 함께 [25. 6. 19]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공모 결과, 거점형은 전북 전주시, 강소형은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특화단지는 대구광역시를 선정하였다.

### <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결과 >

| 사업유형 | 지자체    | 사업부제                                   |
|------|--------|----------------------------------------|
| 거점형  | 전북 전주시 | 전북 Smart Region의 출발점, Adaptive City 전주 |
| 강소형  | 경기 안산시 | 미래 상호문화 플랫폼 도시의 표준을 만들다                |
|      | 경북 김천시 | Mobility Do Everything, 모두를 위한 스마트도시   |
|      | 경남 김해시 | 시민과 첨단기술이 하나된 기후대응 스마트도시 ACE 김해        |
| 특화단지 | 대구광역시  | AI산업 플랫폼 스마트 알파시티                      |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중소도시가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①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 거점형에는 총 3개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전주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 전주시는 전북 메가시티 추진 거점이자 AI 융합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공간과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 AI 중심 미래도시 모델을 만들어 전북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 목적맞춤형 모빌리티\*를 활용한 찾아가는 생활 SOC(이동식 은행, 캠핑 등)를 제공하고, 고령층·취약층 등 사회적 약자 대상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순환식 이동 진료, 응급상황 관제 등)를 지원할 계획이다.

\* PBV(Purpose Built Vehicle): 수요자 관점에서 개발한 차량을 이용하여 목적별 서비스 제공

## ②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 강소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유형(지역소멸 대응형, 기후위기 대응형)을 자율 선택하며, 총 16개 지자체가 신청해 5.3: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선정된 안산시(지역소멸 대응형), 김천시(지역소멸 대응형), 김해시(기후위기 대응형)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 안산시는 내국인 감소, 외국인 비중 증가 등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곡동, 초지동 등 일원에 외국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특화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상호문화 스마트 선도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
- 다국어 지원 안산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와 다문화 지역 행동 데이터 기반 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국시민 자녀들의 정착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김천시는 모빌리티 기술 산업을 발판으로 어모면, 개령면, 울곡동 일원을 모빌리티 특화 스마트도시로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한다.

- 김천형 MaaS, 자율주행 DRT 도입으로 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 기반 AI도시안전관리, 생활물류배달 시스템 등 도시 포용 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 조성으로 산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 김해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기후재난에 취약한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장유생활권 등 일원에 첨단기술 기반 기후대응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주도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 유희부지 활용 햇빛발전소(태양광)를 구축하고, 산업체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재활용), 공동주택 기반 에너지 안심 절감 서비스 등 시민참여 유도(관리비 차감, 지역화폐 보상 등)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 이번 공모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신청해 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대구광역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 대구광역시는 AI 기술로 도시를 혁신하고 어반테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실증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을 로봇·모빌리티, 지능형관제에 특화된 AI 산업육성 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 온디바이스 AI 탑재 드론, CCTV 등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초고속 통신망, 데이터 연계, AI학습 서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실증에 필요한 개방형 데이터플랫폼과 대규모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솔루션이 제시되었다.”면서,
  -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만들어 상생하는 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www.smartcity.go.kr](http://www.smartcity.go.kr))을 통해 6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 주요 내용

### [거점형 : 전북 전주] 전북 Smart Region의 출발점, Adaptive City 전주

- (총사업비) 324.1억원
- (사업위치) 한옥마을, 전주역 일원 등 9개 거점
- (주요내용) 목적맞춤형 모빌리티(이동형 은행, 캠핑카, 교통약자 동행), AI기반 실시간 도로위험 정보, AI전기차 충전 화재관리, AIoT 교통관리, AI시민 건강케어, MaaS, 이동형 진료소, AI약자돌봄 케어
- (참여기관) (주)진인프라, 현대자동차(주), 기아(주), (주)영국씨애플, (주)엠티에스컴퍼니, (주)그리고



### [강소형 : 경기 안산] 미래 상호문화 플랫폼 도시의 표준을 만든다

- <지역소멸 대응형>
- (총사업비) 160억원
  - (사업위치) 안산시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사동 일원
  - (주요내용) MaaS, 자율주행 셔틀, 다문화 상권 활성화 플랫폼, 에너지관리 플랫폼, 디지털헬스케어, 도로위험 감지, 도시데이터 플랫폼 등
  - (참여기관)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씨엠티정보통신(주)



### [강소형 : 경북 김천] Mobility Do Everything, 모두를 위한 스마트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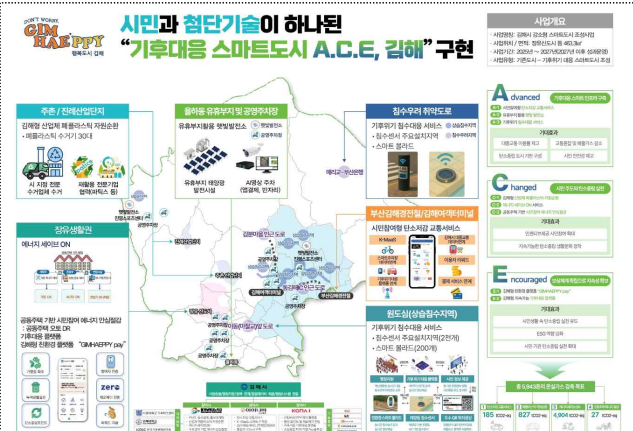
- <지역소멸 대응형>
- (총사업비) 160억원
  - (사업위치) 김천시 어모면, 개령면, 울곡동 일원
  - (주요내용) 김천형 MaaS, 찾아가는 자원순환(농촌 재활용품 등), 이동식 편의점-드론 통합 생활물류, 드론 기반 AI 도시안전 관리, 모빌리티 튜닝 오픈랩
  - (참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주), SK플래닛(주)



## [강소형 : 경남 김해] 시민과 첨단기술이 하나된 기후대응 스마트도시 ACE 김해

### <기후위기 대응형>

- (총사업비) 165억원
- (사업위치) 김해시 전역
- (주요내용) 시민참여 탄소저감 교통, 유휴부지 활용 햇빛발전소, 침수감지 불라드, 산업체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기후대응 플랫폼 등
- (참여기관) (재)경남테크노파크, (주)아이나비시스템즈, 코나아이㈜



## [특화단지 : 대구] AI산업 플랫폼 스마트 알파시티

- (총사업비) 168.15억원
- (사업위치)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
- (특화유형) 모빌리티&로봇, 지능형관제&안전
- (주요내용) [인프라] 기업전용 5G망 및 스타링크, 데이터허브 고도화, AI 컴퓨팅 자원, 테스트베드 등 / [서비스] 온디바이스 AI 기반 첨단행정지원 및 CCTV 스마트 관제, AI 기반 로봇, 자율주차 등
- (참여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텔레칩스, (주)베이리스, (주)유엔디, (주)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 □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25. 6. 24]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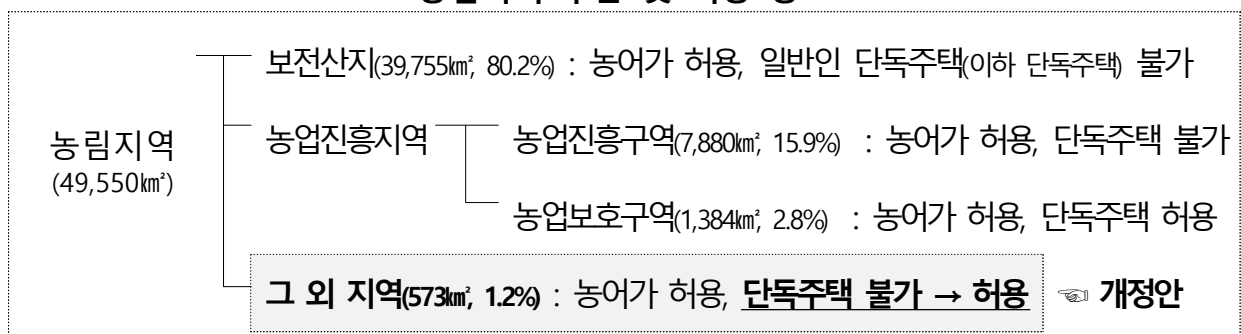
-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m<sup>2</sup>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각각 「산지관리법」, 「농지법」에서 허용 용도를 정함

### <농림지역 구분 및 허용 용도>



②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하였으나,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보호취락지구 신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 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 되는 측면이 있었다.

-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 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

-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보호 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



농어가 주택만 건축 가능  
☞ 귀농·귀촌 걸림돌



일반인 단독주택도 허용  
☞ 체류·여가 수요 대응, 생활인구 증가

② 농공단지 건폐율 7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



일률적으로 건폐율 70% 적용  
☞ 설비 증설, 공장 확장 어려움



기반시설 양호 시 건폐율 80% 확대  
☞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

③ 보호취락지구 신설



주택과 공장, 대형 축사 혼재  
☞ 주거환경 악화



환경 저해 시설 제한, 체험장 등 허용  
☞ 쾌적한 마을 환경, 새로운 수익

④ 개발행위 규제 완화 (종전 허가 규모 내 보수·재설치는 허가 예외)



유지·보수 시에도 개발행위허가 필요  
☞ 사업자 시간·비용 부담



종전 허가 규모 내 허가없이 유지·보수  
☞ 적기 유지·보수



□ **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도시의 변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25. 7. 15]**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 올해는 'Next City for All'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광범위한 기술 혁신이 도시 서비스와 우리 삶에 미칠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 등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 (개막식)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7월 15일 개최한다. 주요 내외빈을 포함하여 200여 명이 참석한다.

- 개막식에서는 모하마드 알리 알 쇼라파(H.E. Mohamed Ali Al Shorafa)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장관급)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 폴 지코폴로스(Paul Zikopoulos) 아이비엠(IBM) 기술 그룹 역량 개발 총괄 부사장이 아이비엠(IBM)의 AI 기술과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을 중심으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첫 번째 기조연설을 하는 데 이어, 데니스 홍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가 시각장애인 운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포용 도시 비전을 제시하는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는다.

○ (전시) 전시에는 국내외 277개 기관이 참여하여 모빌리티, 빌딩·인프라, 에너지·환경, 안전·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분야의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 주요 전시관으로는 부산광역시, 평택시, 천안시 등 도시관, 대한항공, KT 등 기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관, UAE, 홍콩, 대만 등 해외관, AI라이프체험관·스마트\*빌딩관 등 특별관이 조성된다.
  - 특히, 부산광역시는 ‘그린 스마트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오시리아 자율주행버스 등 부산광역시의 스마트시티 주요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콘퍼런스)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35개의 콘퍼런스와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 ‘**WSCE 리더스 포럼**’은 올해 행사의 메인 콘퍼런스로,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과 태국 나콘시탐마랏, 필리핀 바코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도시의 시장·부시장이 참여하며, LG사이언스파크, 현대자동차그룹,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기업 토노무스(TONOMUS), UAE의 투자기업 하이티(HiTi) 등 국내외 기업의 리더도 참여한다.
  - 특별 콘퍼런스로, ❶ ‘Urban AI’, ❷ ‘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기술’, ❸ ‘해외 스마트 시티 사업’을 주제로 하는 각각의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스마트시티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수소도시, 탄소중립, 스마트\*빌딩 등 스마트시티의 주요 주제를 논의하고, K-City Network 사업 참여 도시, MDB(다자개발은행) 등과 해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또한,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 ITS학회,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도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 (비즈니스)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해외 바이어 23개국 60개사, 국내 바이어 30개사를 모집하여 국내 중소·스타트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한다.

- 또한, 대한항공,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중소·스타트업과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UAE의 투자기업 **하이티(HiTi)**, 베트남싱가포르공단과 함께 **비즈니스 밋업\*\***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해외기관과 국내 기업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미팅 기회도 부여한다.

\* 기업이 외부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혁신을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을 의미

\*\* 기업 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위한 실용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의미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AI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기술 혁신은 스마트시티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가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AI시티’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부산광역시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은 “이번 엑스포는 부산과 함께 하는 첫 행사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적용된 부산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로서 부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 ([www.worldsmartcityexpo.com](http://www.worldsmartcityexp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행사 개요

- (목 적) 스마트시티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외 정부·도시·기업·전문가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17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
  - (일시/장소) '25. 7. 15(화) ~ 7. 17(목)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 (주최/주관) 국토부, 과기부 / 부산시, LH, K-water, 벡스코, 스토협
  - (슬로건) Next City For All\*
- \* AI 등 광범위한 기술 혁신과 사회적 포용성을 담아내는 스마트시티 미래상을 시사

## ○ 주요 내용

- (개막식) 국토교통부 개회사, 부산시장 환영사,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 축사, 기업·전문가 기조연설\*
- \* (기업) IBM Paul Zikopoulos 부사장, (전문가) UCLA 데니스 홍 교수
- (전 시) 부산, 세종·부산 시범도시(LH, K-water), AI라이프체험·스마트\*빌딩 특별관, 해외 전시관 등 조성
- \* ('24년) 291개사 795부스 3.86만명 참관
- 부산시 유관 행사인 'K-ICT Week in Busan'과 통합 전시장 조성
- \* (개요) AI·IT·CLOUD 3개 분야 통합 전시회로, '24년 201개사 489부스 1.54만명 참관
- (비즈니스)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사업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어 상담회, 오픈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밋업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
- (컨퍼런스)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연사가 참여하여 글로벌 의제, 정책·기술 동향 등을 논의하는 35개 컨퍼런스·부대행사 개최
- (G2G 등) G2G 회의(UAE 의장, 체코 차관), IDB·ADB·WB 회의
- (시 상)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및 WSCE 개최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



## 참고 2

## WSCE 2025 전시장 배치도

### 전시장 배치도

**WSCE** WORLD SMART CITY EXPO KOREA

- 국가시범도시
- 도시공동관
- 스마트시티 솔루션
- 부대시설
- 특별관
- 우수기업 비즈니스 페어관
- 해외관
- K-ICT WEEK in BUSAN



# 참고 3

# WSCE 2025 행사 일정표

## 행사 일정표



공식행사    주최주관 콘퍼런스    특별 콘퍼런스    공모 콘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부대행사

|                        |             | 시간                  | 제1전시장                         |                                              |                                                 |                                                          |                                    | 제2전시장                                   |                                          |                                                       |
|------------------------|-------------|---------------------|-------------------------------|----------------------------------------------|-------------------------------------------------|----------------------------------------------------------|------------------------------------|-----------------------------------------|------------------------------------------|-------------------------------------------------------|
|                        |             |                     | World Stage                   | Next Stage                                   | 아고라                                             | 213                                                      | 214, 215                           | 217, 218                                | 121+122+123                              | 124                                                   |
| 7.15<br>(화)<br><br>1일차 | 10:00-11:00 | 개막식                 |                               |                                              |                                                 |                                                          |                                    |                                         |                                          |                                                       |
|                        | 11:00-12:00 |                     |                               |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기업 설명회<br>11:00-12:45<br>국토교통부 | 미래 도시공간의 재구성 'X분 도시' 사단법인 스마트도시 건축학회            |                                                          | K-디지털 트윈 월드 콘퍼런스<br>과학기술<br>정보통신부  |                                         |                                          | Global Trends of Urban Transition Pathways<br>K water |
|                        | 12:00-13:00 |                     |                               |                                              |                                                 |                                                          |                                    |                                         |                                          |                                                       |
|                        | 13:00-14:00 |                     |                               |                                              |                                                 |                                                          |                                    |                                         |                                          |                                                       |
|                        | 14:00-15:00 | WSCE 리더스포럼<br>부산광역시 |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br>국토교통부   | 기업발표회                                        | KAIA Innovate UK 양자협력형 국제공동연구 2단계 착수회의<br>국토교통부 | 스마트시티 국제컨퍼런스 4th<br>LH 토지주택연구원, 주한 덴마크 대사관,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 | K-Smart City 비즈니스 파트너십 데이<br>국토교통부 | 제10회 스마트시티 전국 지자체 협의회<br>스마트시티 전국지자체협의회 | 2025 ETRI Tech-Day in Busan<br>한국전자통신연구원 | AI BUS 2025<br>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데이터이 디지털조선일보             |
|                        | 15:00-16:00 |                     | AI 도시정책 혁신과 AI 도시 구현<br>국토연구원 |                                              |                                                 |                                                          |                                    |                                         |                                          |                                                       |
|                        | 16:00-17:00 |                     |                               |                                              |                                                 |                                                          |                                    |                                         |                                          |                                                       |
|                        | 17:00-18:00 |                     |                               |                                              |                                                 |                                                          |                                    |                                         |                                          |                                                       |
|                        | 18:00-19:00 |                     |                               |                                              |                                                 |                                                          |                                    |                                         |                                          |                                                       |

|                        | 시간          | 제1전시장                             |                                               |                                 |                                                      |                                    |                                                           | 제2전시장                                                                 |                                                               |                                                                     |
|------------------------|-------------|-----------------------------------|-----------------------------------------------|---------------------------------|------------------------------------------------------|------------------------------------|-----------------------------------------------------------|-----------------------------------------------------------------------|---------------------------------------------------------------|---------------------------------------------------------------------|
|                        |             | World Stage                       | Next Stage                                    | 아고라                             | 213                                                  | 214, 215                           | 217, 218                                                  | 121, 122                                                              | 123+124                                                       | 125+126                                                             |
| 7.16<br>(수)<br><br>2일차 | 10:00-11:00 | 수소도시<br>융합포럼<br>콘퍼런스<br><br>국토교통부 | 포스트 스마트시티<br>패러다임,<br>Urban AI<br><br>스마트도시협회 | K-스마트시티<br>게이트웨이포럼<br>LH토지주택연구원 | 한-MDB<br>스마트시티<br>글로벌 네트워크포럼<br>10:00-12:20<br>국토교통부 | 오픈<br>이노베이션 1<br><br>카카오톡이노베이션 시상식 | 2025<br>글로벌 스마트시티<br>리더십 포럼<br><br>서울대학교<br>글로벌 R&D센터     | 한국형 스마트<br>모빌리티의<br>현재와 미래<br><br>한국IT학회                              | AI BUS 2025<br><br>부산대학교<br>부산대학교병원<br>데이터이<br>디지털조선일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0-14:00 |                                   |                                               |                                 |                                                      |                                    |                                                           |                                                                       |                                                               |                                                                     |
|                        | 14:00-15:00 | 스마트시티<br>이니셔티브<br>심포지엄<br>국토교통부   | 제6회<br>LH 글로벌<br>비즈니스 컨벤션<br>(GBC)<br>LH      | 기업발표회<br>+ WSCE<br>어워즈 수상기업     | 탄소중립<br>스마트도시<br>국제 컨퍼런스<br>국토교통부                    | 비즈니스<br>밋업                         | NEXT : 다가오는<br>스마트기술,<br>바뀌는 세상<br>14:00-16:15<br>스마트도시협회 | DIAMOND<br>Regional<br>Workshop<br>in Busan<br><br>서울대학교<br>글로벌 R&D센터 | worldwide<br>HackYour<br>City movement<br><br>대한국도·<br>도시계획학회 | 해양위성정보 기반<br>스마트 해양 서비스<br>오픈플랫폼 개발<br><br>한국해양<br>과학기술원<br>(KIOST) |
|                        | 15:00-16:00 |                                   |                                               |                                 |                                                      |                                    |                                                           |                                                                       |                                                               |                                                                     |
|                        | 16:00-17:00 |                                   |                                               |                                 |                                                      |                                    |                                                           |                                                                       |                                                               |                                                                     |
|                        | 17:00-18:00 |                                   |                                               |                                 |                                                      |                                    |                                                           |                                                                       |                                                               |                                                                     |
|                        | 18:00-19:00 | 어워즈 +<br>네트워킹 파티                  |                                               |                                 |                                                      |                                    |                                                           |                                                                       |                                                               |                                                                     |

| 시간              | 제1전시장       |                                                   |                         |                                                    |                                                 |                            | 제2전시장                                                       |  |
|-----------------|-------------|---------------------------------------------------|-------------------------|----------------------------------------------------|-------------------------------------------------|----------------------------|-------------------------------------------------------------|--|
|                 | World Stage | Next Stage                                        | 아고라                     | 213                                                | 214, 215                                        | 217, 218                   | 121+122                                                     |  |
| 7.17 (목)<br>3일차 | 10:00-11:00 | 미래 모빌리티와 탄소중립 도시 국제 콘퍼런스 with COMPAS LH           | 글로벌 스마트시티 비즈 서밋 스마트도시협회 | 기업발표회                                              | Smart Government in the Era of AI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 오픈 이노베이션 2 대한항공            | '스마트시티 국내실증 사업' 성과공유회 09:30-12:00 국토교통부                     |  |
|                 | 11:00-12:00 |                                                   |                         |                                                    |                                                 |                            |                                                             |  |
|                 | 12:00-13:00 |                                                   |                         |                                                    |                                                 | 오픈 이노베이션 시상식               |                                                             |  |
|                 | 13:00-14:00 |                                                   |                         |                                                    |                                                 |                            | 2025년 K-City Network 계획수립형 사업 보고 및 기업 간담회 10:00-12:20 국토교통부 |  |
|                 | 14:00-15:00 | AI 스마트시티 에너지 최적화 전략 콘퍼런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 기업발표회                   | 미래도시 인프라 국제포럼: 한국도시설계학회 x 세계스마트시티가교(WeGO) 한국도시설계학회 |                                                 |                            |                                                             |  |
|                 | 15:00-16:00 | 스마트+빌딩 정책 콘퍼런스 국토교통부                              |                         |                                                    |                                                 |                            |                                                             |  |
|                 | 16:00-17:00 |                                                   |                         |                                                    |                                                 | 제2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콘퍼런스 국토교통부 | 2025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중간보고회 국토교통부                   |  |
|                 | 17:00-18:00 |                                                   |                         |                                                    |                                                 |                            |                                                             |  |
|                 | 18:00-19:00 |                                                   |                         |                                                    |                                                 |                            |                                                             |  |

\*프로그램 일정은 행사 준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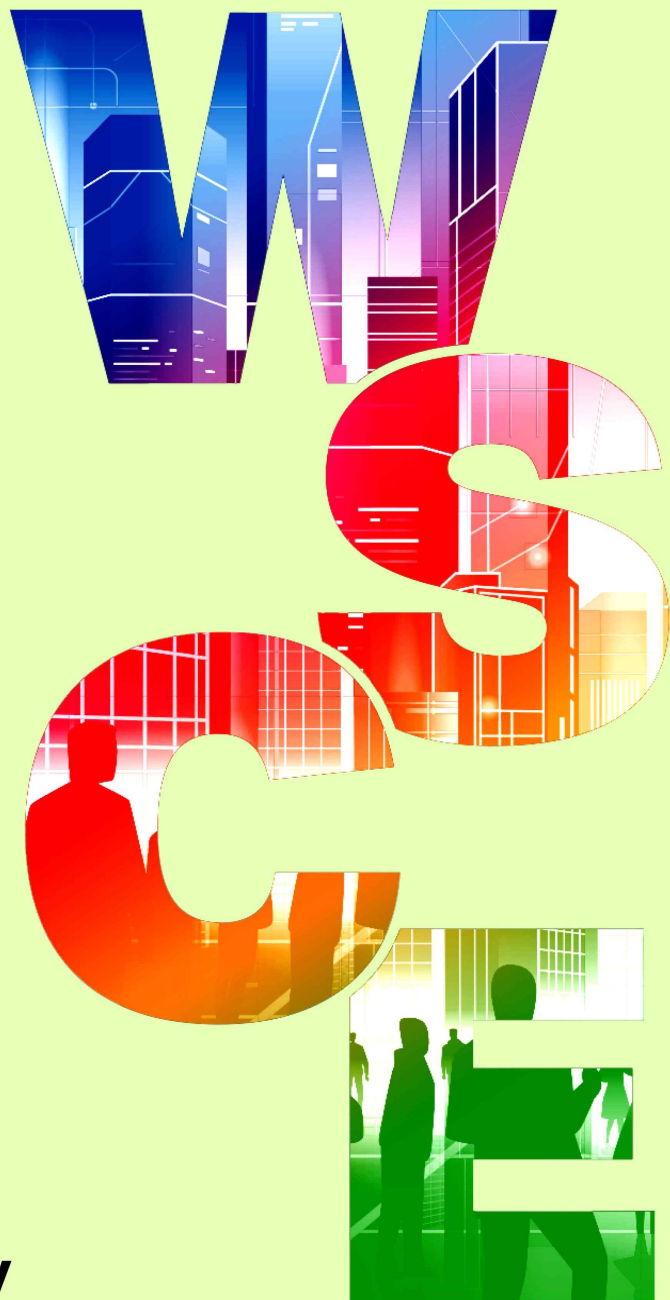
**WSCE** WORLD  
SMART CITY  
EXPO KOREA

# World Smart City Expo

## NEXT CITY FOR ALL

2025.  
7.15<sup>Tue</sup> — 17<sup>Thu</sup>

**BEXCO,  
Busan  
Metropolitan City**



## □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25. 7. 23]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4년 기준 도시 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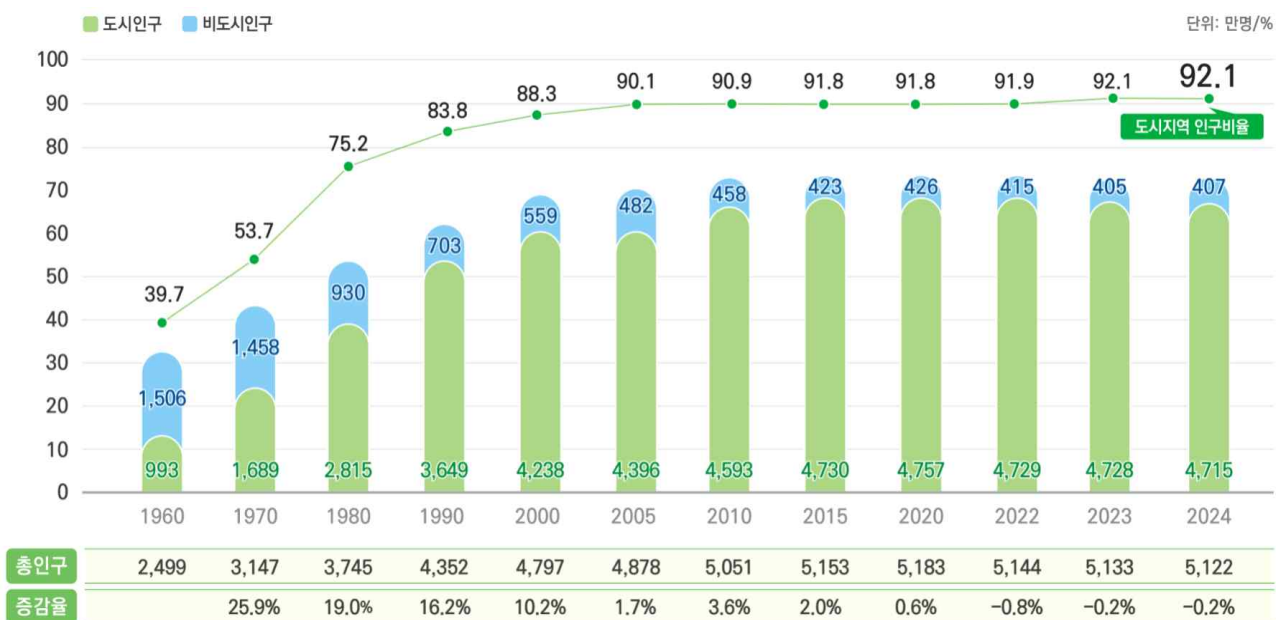
○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 거주

- '24년 도시지역 면적(17,639km<sup>2</sup>)은 국토 면적(106,567km<sup>2</sup>)의 16.5% 수준이며,
- 주민등록인구의 92.1%인 4,715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 주민등록인구 5,122만 명, 도시지역 인구 4,715만 명, 비도시지역 인구 407만 명

-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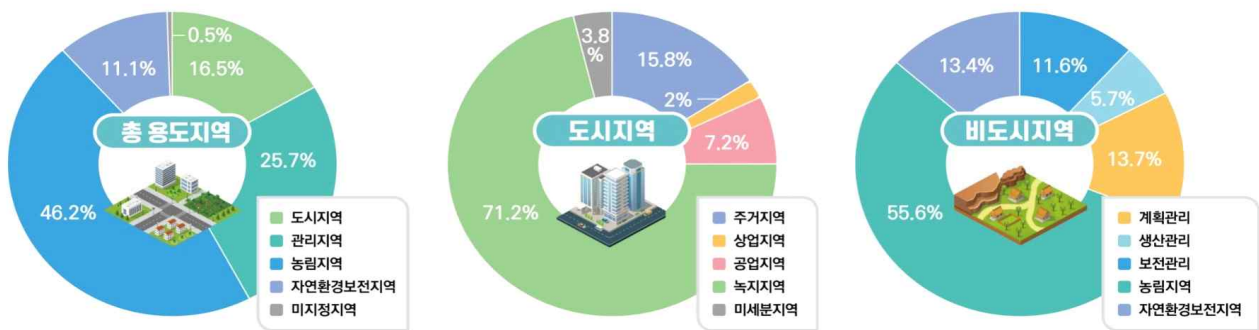


○ 간척사업 등으로 전 국토 용도지역 면적 증가, 공업지역 크게 확대

- 전 국토(106,567km<sup>2</sup>)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19년 106,211km<sup>2</sup> 대비 356km<sup>2</sup>(0.3% ↑) 증가했다.
-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7,639km<sup>2</sup>(16.5%), 관리지역 27,342km<sup>2</sup>(25.7%), 농림지역 49,189km<sup>2</sup>(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2km<sup>2</sup>(11.1%), 미지정지역\* 525km<sup>2</sup>(0.5%)로 구분되어 있다.

\* 공유수면 매립 등 간척사업 완료 후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않은 지역

< '24년 용도지역 지정 현황 >



- '19년과 대비하여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83km<sup>2</sup>(3.1% ↑), 상업지역 10km<sup>2</sup>(2.8% ↑), 공업지역 58km<sup>2</sup>(4.8% ↑)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 (76km<sup>2</sup>, 0.6%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동 현황 >

(단위: km<sup>2</sup>)

| 유형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19-'24년 증감(비율)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2,701  | 2,713  | 2,740  | 2,753  | 2,761  | 2,784  | 83 (3.1%)       |
|      | 상업지역 | 338    | 338    | 342    | 343    | 345    | 348    | 10 (2.8%)       |
|      | 공업지역 | 1,219  | 1,222  | 1,241  | 1,253  | 1,267  | 1,277  | 58 (4.8%)       |
|      | 녹지지역 | 12,632 | 12,622 | 12,592 | 12,581 | 12,545 | 12,556 | △76 (△0.6%)     |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5년 만에 13.7배 확대

- '14년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4년 11,975개소, 4,259km<sup>2</sup>로 집계됐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특히, '24년은 '23년 대비 최대 폭으로 증가(3,360km<sup>2</sup> ↑, 373.7%)하였으며,
- 이는 '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연도별 현황 >

(단위: km<sup>2</sup>, 개)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면적 | 310  | 325  | 332  | 436  | 899  | 4,259  |
| 개소 | 65   | 98   | 158  | 169  | 336  | 11,975 |

○ 개발행위허가는 18만 6천여 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 지속

-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24년 186,080건으로 집계됐다.

\*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토석채취

- 건축물의 건축(90,769건, 48.8%)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50,949건, 27.4%), 공작물의 설치(27,401건, 14.7%) 순으로 조사됐다.

< 유형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

(단위: 건)

| 건축물의 건축           | 토지형질 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분할             | 물건적치          | 토석채취          |
|-------------------|-------------------|-------------------|------------------|---------------|---------------|
| 90,769<br>(48.8%) | 50,949<br>(27.4%) | 27,401<br>(14.7%) | 15,922<br>(8.5%) | 676<br>(0.4%) | 363<br>(0.2%) |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6년~'18년에 개발행위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3년간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 < 개발행위허가 연도별 추이 >



###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10년 전 대비 63.9% 감소

-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36.6만 개, 7,196km<sup>2</sup>로 집계됐다.
- 면적기준으로 살펴보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02km<sup>2</sup>(32.0%)로 가장 많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42km<sup>2</sup>(31.2%),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208km<sup>2</sup>(16.8%) 순으로 나타났다.

### < '24년 도시·군계획시설 유형별 결정 현황 >

(단위: km<sup>2</sup>)

| 교통시설             | 방재시설             | 공간시설             | 공공문화<br>체육시설     | 유통 및<br>공급시설  | 환경기초<br>시설    | 보건위생<br>시설   |
|------------------|------------------|------------------|------------------|---------------|---------------|--------------|
| 2,302<br>(32.0%) | 2,242<br>(31.2%) | 1,208<br>(16.8%) | 1,020<br>(14.2%) | 262<br>(3.6%) | 115<br>(1.6%) | 46<br>(0.6%) |

-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4년 943km<sup>2</sup>에서 '24년 340km<sup>2</sup>로 63.9%(603km<sup>2</sup>) 감소했다.
- 이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20.7월)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14년)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도시·군계획시설 면적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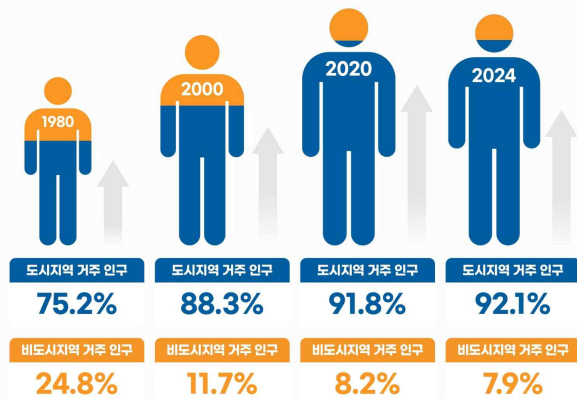
○ '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www.eum.go.kr](http://www.eum.go.kr)) 및 지표누리([www.index.go.kr](http://www.index.go.kr))를 통해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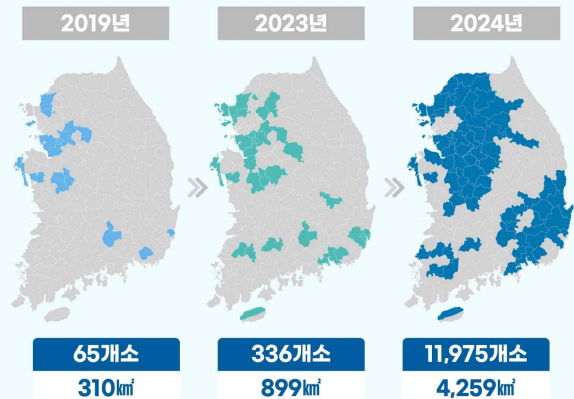
## '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인포그래픽



### | 주민등록 총인구 중 도시 및 비도시 거주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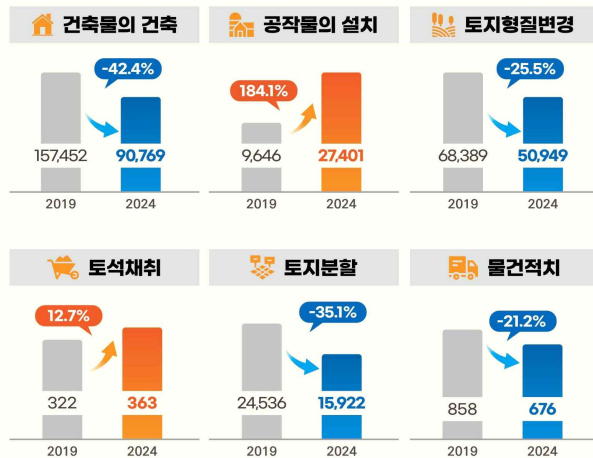
### | 성장관리계획구역 추이



### 2024년 개발행위허가 186,080건, 5년전 대비 28.8% 감소

### 도시·군계획시설 집행 비율 93.7%, 장기미집행시설 10년간 63.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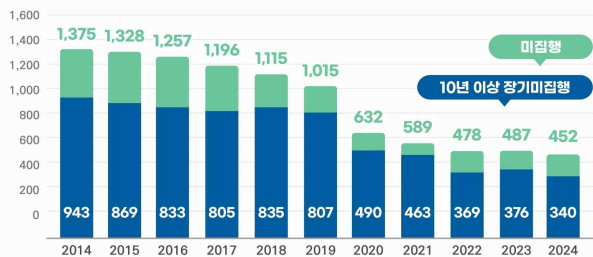
### | 2024년 유형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 | 2024년 지역별 도시·군계획시설 집행비율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
| 96.3% | 92.6% | 95.0% | 95.2% | 92.6% | 97.7% | 89.3% | 99.0% | 91.1%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전국    |
| 93.7% | 96.1% | 94.2% | 95.2% | 95.1% | 93.0% | 91.9% | 95.8% | 93.7% |

### |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면적 연도별 추이



### □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첫 공급 개시 (25. 7. 24)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7월 24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 본청약(A-1·A-2블록)을 개시한다.
  -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이며, 이를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등을 포함하여 하반기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1.2만호의 공공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남양주왕숙 A-1, A-2블록 공급 물량은 총 1,030호이며, 전용면적 46㎡, 55㎡, 59㎡의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남양주왕숙 A-1, A-2 블록 주택형별 공급대상 >

| 구분  | 주택형별 | 세대수   | 구분  | 주택형별 | 세대수 | 입주예정시기         |
|-----|------|-------|-----|------|-----|----------------|
| 계   |      | 1,030 | A-2 | 46㎡  | 57  | '28.8월<br>(예정) |
| A-1 | 59㎡  | 629   |     | 55㎡  | 344 |                |

\* 위 공급호수는 입주자 모집 시 최종 확정됨

- 해당 블록은 왕숙천 수변공원과 선형공원 등과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이돌봄시설이 배치돼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 블록 인근에 있는 풍양역(진접2지구내)으로 4호선·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 남양주왕숙 지구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선), 경춘선의 3개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왕숙역, 가칭)'이 형성될 예정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접근이 용이하여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까지 빠르게 접근 가능하다.



- 아울러, 신도시 내 120만㎡ 규모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 데이터센터·우리금융 금융연구개발센터 등 주요 선도 기업이 투자 협약(MOU)을 체결하여, 서울과의 우수한 접근성과 일자리 창출 기능을 동시에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의 조성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 해당블록 분양가는 인근 남양주 별내·다산 등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전매제한은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 세대 평면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주방 대형화 및 다양한 옵션 제공, 현관창고·드레스룸 등 수납공간 강화 설계가 적용되었다.

○ 입주자모집 공고는 7월 24일, 청약접수는 8월 4일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체결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8년 8월 예정이다.

○ 한편, LH는 남양주 별내동(816-1)에 신축한 전용 주택전시관은 7월 25일 개관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유희기간에는 지역주민에게 주택전시관을 개방하여 업사이클 문화 체험, 소규모 강좌,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주택전시관은 개관 이튿날인 26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 온라인 사이버모델 하우스(<https://lh-ws.co.kr>)를 통해서도 견본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 남양주왕숙 A-1, A-2블록 견본주택 공개일정 >

| 사전청약 당첨자          | 일반청약자            |
|-------------------|------------------|
| 7.26(토) ~ 7.27(일) | 7.28(월) ~ 8.3(일) |

-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공공분양 단지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내 집 마련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031-719-8982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급은 **새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왕숙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 LH 김성연 경기북부지역본부장도 “**보상 조기 마무리와 동시 착공 등 현장 직원들의 노력 끝에 첫 본 청약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왕숙지구가 수도권 대표 자족형 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참고 1

##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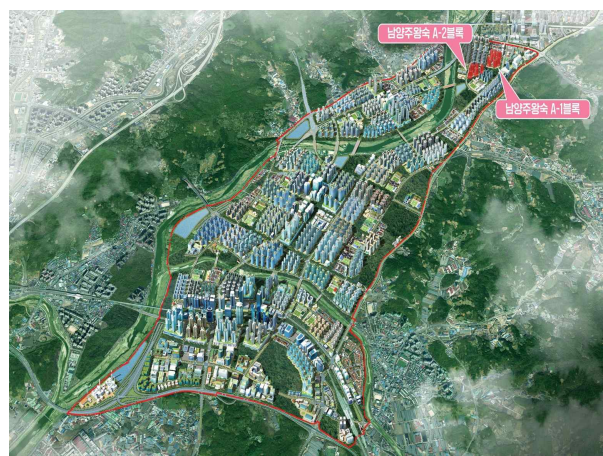
남양주왕숙 A-1블록 조감도



남양주왕숙 A-2블록 조감도



남양주왕숙 A-1·A-2블록 위치 상세도



남양주왕숙지구 위치도



남양주왕숙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도

## 참고 2

## 수도권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 ○ '25년 하반기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분양계획

| 지역 | 공급<br>일정 | 사업지구    | 블록   | 주택유형     | 공급물량<br>(단위 : 호) | 사업<br>시행자 |
|----|----------|---------|------|----------|------------------|-----------|
| 계  |          |         | 24개  |          | 12,300           |           |
| 경기 | 7월       | 화성동탄2   | C-14 | 선택형      | 610              | LH        |
| 경기 | 7월       | 남양주진접2  | A-1  | 일반형      | 920              | LH        |
| 경기 | 7월       | 남양주진접2  | A-4  | 공공분양(신혼) | 255              | LH        |
| 경기 | 7월       | 구리갈매역세권 | A-1  | 공공분양(신혼) | 1,182            | LH        |
| 경기 | 7월       | 남양주왕숙   | A-1  | 공공분양     | 629              | LH        |
| 경기 | 7월       | 남양주왕숙   | A-2  | 공공분양(신혼) | 401              | LH        |
| 경기 | 7월       | 남양주왕숙   | B-1  | 공공분양     | 560              | LH        |
| 경기 | 7월       | 남양주왕숙   | B-2  | 일반형      | 587              | LH        |
| 경기 | 8월       | 과천주암    | C2   | 공공분양(신혼) | 686              | LH        |
| 경기 | 8월       | 의정부우정   | A-1  | 공공분양     | 538              | LH        |
| 경기 | 9월       | 시흥하중    | A-4  | 공공분양(신혼) | 390              | LH        |
| 경기 | 9월       | 남양주진접2  | A-7  | 일반형      | 405              | LH        |
| 경기 | 11월      | 군포대야미   | A2   | 공공분양(신혼) | 1,003            | LH        |
| 경기 | 11월      | 남양주왕숙   | A-24 | 공공분양(신혼) | 393              | LH        |
| 경기 | 11월      | 남양주왕숙   | B-17 | 공공분양     | 499              | LH        |
| 경기 | 12월      | 과천주암    | C1   | 공공분양     | 120              | LH        |
| 경기 | 12월      | 과천주암    | C1   | 공공분양(신혼) | 812              | LH        |
| 경기 | 12월      | 남양주진접2  | A-3  | 공공분양(신혼) | 208              | LH        |
| 경기 | 12월      | 남양주진접2  | B-1  | 공공분양     | 260              | LH        |
| 경기 | 12월      | 구리갈매역세권 | A-4  | 일반형      | 251              | LH        |
| 경기 | 12월      | 구리갈매역세권 | A-4  | 선택형      | 310              | LH        |
| 경기 | 12월      | 김포고촌2   | A1   | 일반형      | 262              | LH        |
| 인천 | 12월      | 인천영종    | A24  | 공공분양     | 638              | LH        |
| 서울 | 12월      | 마곡지구    | 10-2 | 나눔형      | 381              | SH        |



##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동향

### <국토연구원>

#### □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 주요내용

-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에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인구 개념은 상주인구 기반으로 비상주인구의 지속적 영향을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인구 개념과는 다름
- ③ 체류인구의 확대가 중요한 최근의 생활인구 정책과 달리,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의 사용규모인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을 감안하여 인구수용능력에 대한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함
- ④ 최근 수립한 69개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 검토 시, 상주인구 대비 비상주인구의 목표연도 평균비율은 22.1%였고 최대는 69.4%(강원도 고성군)로 비상주인구 비중이 적지 않음
- ⑤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적 인구개념을 상주인구로 하여 비상주인구 지속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개념이 필요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을 구분하여 도입기준 마련

##### 정책방안

- ① (개념·기준) 보편적 개념과 도입기준 마련: 생활인구 개념은 일상적 인구(상주+정기적 방문)와 비정기적 방문 일부를 포함하여 ‘활동인구’로 규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영역·부문별로 구분하여 도입방안 제안
  - 비상주인구는 활동 유형에 따라 ‘정기적’, ‘유동적’, ‘고정적’인 특성을 가짐
- ② (운용) 새로운 여건에 대응한 도입 장려: 활동인구의 공간적·규모적 확대의 장기적 추세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장기 발전방향 설정, 공간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조사·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도록 장려



- ③ (제도) 부문별 의무·선택적 도입의 제도적 규정: 활동인구의 규모가 큰 경우 기초기반시설 및 환경 등의 부문에 의무적 도입, 도시발전·공간 전략설정 시 도입 권장, 물리적 공간계획에는 필요시 선택적 도입 제안

## 0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생활인구 개념 도입 필요성

### ○ 생활인구 개념의 등장 및 정책동향

거주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생활공간이 확장되면서 등록인구와 활동인구 간의 미스매칭에 대한 문제의식,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속 정주인구 외 대안적 인구 개념 도입 요구

- 지역에 등록한 인구와 실제 활동하는 인구 간 미스매칭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며 국내외 대안적 인구개념 등장
-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특정지역(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등 지역의 위기 속에서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2022년 6월 1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정의되고 제도화

표 1 국내 주요 대안적 인구개념

| 인구명칭                  | 내용                                                                                                                                                                                               |
|-----------------------|--------------------------------------------------------------------------------------------------------------------------------------------------------------------------------------------------|
|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를 집계하여 작성한 인구수                                                                                                                                                   |
| 상주인구                  | 거주인구 개념을 기반으로 조사대상 인구를 등록된 거주지역에 귀속시켜 계상하는 인구                                                                                                                                                    |
| 주간인구                  | 해당 지역의 상주인구에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통근·통학인구(주간유입인구)를 더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통학인구(주간유출인구)를 뺀 인구                                                                                                                 |
| 서울 생활인구               |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물론 업무, 관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총칭하며 특정시점에, 서울의 특정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로 현주인구(de facto population) 또는 현재인구, 서비스인구                                                        |
| 제주 생활인구               | 거주를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을 목적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수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생활인구 |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br>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br>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br>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자료: 선행연구 내용을 안소현 외 2022, 26 및 29에서 일부 발췌하여 작성.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개념 등장과 함께 생활인구 확대사업이 추진 중이며,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도입 추진 중

- 정부의 생활인구 관련 정책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확대에 집중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개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규모를 산정하고 공표
- 국토교통부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인구감소 도시의 도시·군기본계획상 개발 용지와 관련하여 생활인구 활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통계,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 의무화
- 정책·생활 여건변화에 따라 생활인구는 확대·확장되고 있고, 생활인구의 규모를 파악하여 공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생활인구 개념의 정립과 사용기준 마련이 중요

#### ○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관리적 접근 필요

체류인구 확대를 중요시하는 생활인구 정책과 달리, 도시계획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제반 비상주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도시수용능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공간계획에 반영할 필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는 관광뿐만 아니라 두 지역 살이, 로컬 유학, 로컬벤처, 지역 워케이션, 은퇴자마을 사업 등을 통한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고안된 개념임
  - 도시계획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생활범위의 공간적 확장, 증가하는 생활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수용 용량 한계를 고려하여 장래 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지자체 장기 인구규모를 계획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의 변동성과 도시의 수용력에 따라 정책에 의해 확대되는 생활인구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
-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인구를 기반으로 토지이용, 기반 시설로부터 주거, 환경, 경제, 산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별 계획을 수립
  - 도시기본계획은 이를 용도지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공간에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및 기준으로 기능
  -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에 대응하고 지표적 모순 등을 보완하여 도시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증가하는 생활인구의 영향력을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

이용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은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수용 용량에 부하를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공급과잉의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여 적정 생활인구 개념과 규모 파악이 중요

- 생활인구의 증가는 특히 토지이용,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에너지, 환경오염 등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구규모로 도시의 자원 활용 용량이 결정되어 생활인구의 개념정립은 매우 중요

### ○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생활인구 개념도입 필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개념과 도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 기본계획의 주간활동인구 개념이 달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실제 상주인구를 기반으로 비상주인구의 지속적 영향을 관리하는 생활인구 개념 필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개념은 주민으로 등록한 ‘주민등록인구 (재외국민 포함)’를 기반으로 등록한 외국인 및 거소신고한 재외동포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방식의 인구개념으로 규모 확대를 위한 개념적 구조
- 도시기본계획에서 사용되어온 생활인구 개념인 ‘주간활동인구’는 인구기반을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상주인구’로 하여 직장·학업·군복무 등 체류인구와 외국인 체류인구까지도 상주의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비상주인구는 통근·통학과 같은 지속성을 전제로 하는 의도가 있음

기본적 인구개념이 인구의 ‘상주’인 것과 어떤 유형의 비상주인구를 지속적이라 판단할지와 어느 부문에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계획인구 외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도 유의미

- 국토교통부의 생활인구 도입 공표로 생활인구를 고려한 많은 도시·군기본계획 미수립 지자체의 수립 수요가 예상되나,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마련이 되었을 뿐 오용 등 생활인구 도입 시 활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함
- 기본적 인구개념이 인구의 상주임이 강조되나, 비상주인구의 영향력이 지속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활동유형별 인구의 산입, 활용 범위 등 기준 마련

그림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도시기본계획 생활인구 개념의 구성과 목적



## 02. 도시기본계획의 생활인구 개념

### ○ 도시기본계획 제도상 생활인구 개념의 특성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한정된 자원이 도시장기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수용 능력과 용량 내에서 사용량을 결정하는 역할

- 도시기본계획 제도상 인구의 역할은 도시의 수용 능력범위 안에서 도시의 공간적 자원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사용될 규모를 결정하게 됨

‘등록인구’가 아닌 ‘상주인구’를 기본인구로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상주인구의 조사가 어렵고 데이터로 활용되는 등록센서스에서도 정확한 상주인구의 파악은 어려움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인구는 ‘상주인구’이며, 지표 설정 시 권장하고 기준이 되는 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임
- 통계청 인구추계치는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인구총조사와 등록센서스의 인구개념이 상주인구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정확한 추산에는 어려움이 있음

#### ■ 2022년 기준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통계청 인구추계치)

- 이 자료는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초로 최근까지의 시·도별 인구변동 요인(출생·사망·이동) 추이를 반영해서 미래 인구변동 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30년(2022~2052년)간의 시·도별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임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는 7월 1일 시점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인구이며,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함
  -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와는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2024.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2-3.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생활인구 특성은 실제 살고 있는 ‘상주인구’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며, 비상주인구도 그 영향력이 유지되는 경우일 때 ‘주간활동인구’, 즉 생활인구로서 고려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생활인구 개념은 기본 등록인구에서 지역에 방문하는 다양한 체류인구를 일컫는 개념으로 ‘등록인구 외에도 실제로 활동하는 모든 인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도시기본계획의 생활인구 개념은 상주인구(직장·학업체류 등 포함)와 ‘영향력’을 유지할 정도의 비상주인구를 포함하여 일컫는 개념으로 ‘실제 상주 또는 실제 생활하는 인구’로 보는 것이 타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개념에는 해당 지역에 등록되었으나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 상주인구, 재외국민까지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생활인구 개념보다 많은 인구를 포함
-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할 경우, 비상주인구의 유동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도시수용능력 내에서 도시의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원칙 필요

### 03. 도시·군기본계획의 생활인구 개념 활용사례

#### ○ 생활인구 개념의 지자체 활용사례 검토

현재 수립되어 구득 가능한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 중, 목표연도가 2035년 또는 2040년인 69개 도시·군기본계획 전부를 살펴보고 주간활동인구를 활용하고 있는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음

- 유형 1인 15개(21.7%) 지자체에서는 현황검토 및 여건변화 분석을 위해 주간활동인구를 활용



그림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개념 비교



- 유형 2와 유형 3인 20개(29.0%) 지자체에서는 주간활동인구를 상업용지, 기반시설(상하수도 등), 환경 영향(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추정에 활용

표 2 도시·군기본계획상 주간활동인구 활용 유형 및 지자체 수

| 활용 유형                                         | 지자체 수 | 비율(%) |
|-----------------------------------------------|-------|-------|
| 합계                                            | 69    | 100   |
| 주간활동인구 미고려                                    | 25    | 36.2  |
| 유형 1: 현황검토 자료 및 여건변화 분석자료로 활용                 | 15    | 21.7  |
| 유형 2: 상업용지수요 추정 및 교통수요 분석에만 제한적 활용            | 12    | 17.4  |
| 유형 3: 상업용지수요 추정 및 기반시설계획, 환경지표 등에 주로 활용       | 8     | 11.6  |
| 유형 4: 인구감소도시에서 성장형 도시의 계획인구 설정 근거로 사용         | 3     | 4.4   |
| 유형 5: 주간활동인구를 계획인구로 사용하고 대부분 계획수요 산정에 적용      | 3     | 4.4   |
| 유형 5-1: 주간활동인구를 계획인구로 사용하나 주로 상주인구 기반으로 계획 수립 | 3     | 4.4   |

자료: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저자 작성.

생활인구 도입의 필요성 차원에서, 상주인구 대비 비상주인구 비율이 평균 22.1%임을 감안하면 비상주인구 비중이 적지 않아 도시관리를 위해서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할 수준

- 지자체별 상주인구 대비 비상주인구의 비율 평균은 22.1%였고, 최대는 69.4%(강원도 고성군), 최소는 2.1%(경상남도 밀양시)였음
- 인구증가, 낮은 검토 필요성 등의 이유로 주간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지자체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 등)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비상주인구 비율 평균을 볼 때 전국적으로 비상주인구의 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표 3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상 상주인구 대비 비상주인구 비율

| 구분    | 목표연도 | 상주인구(a) | 비상주인구(b) | a/b(%) |
|-------|------|---------|----------|--------|
| 세종    | 2040 | 785,000 | 48,000   | 6.1    |
| 제주    | 2040 | 800,000 | 200,000  | 25.0   |
| 경기 가평 | 2035 | 100,000 | 14,715   | 14.7   |
| 강원 강릉 | 2035 | 235,500 | 56,000   | 23.8   |
| 강원 속초 | 2040 | 90,930  | 52,830   | 58.1   |
| 강원 삼척 | 2035 | 88,900  | 29,900   | 33.6   |
| 강원 홍천 | 2040 | 72,200  | 24,780   | 34.3   |
| 강원 횡성 | 2040 | 55,000  | 5,000    | 9.1    |
| 강원 영월 | 2035 | 40,800  | 4,670    | 11.4   |
| 강원 평창 | 2035 | 42,000  | 5,000    | 11.9   |
| 강원 화천 | 2040 | 30,800  | 9,800    | 31.8   |
| 강원 양구 | 2040 | 25,000  | 3,530    | 14.1   |
| 강원 인제 | 2040 | 37,400  | 24,600   | 65.8   |
| 강원 고성 | 2035 | 31,000  | 21,500   | 69.4   |
| 충북 청주 | 2040 | 941,000 | 64,549   | 6.9    |
| 충북 보은 | 2040 | 36,000  | 6,244    | 17.3   |
| 충북 단양 | 2040 | 33,000  | 19,700   | 59.7   |
| 충남 천안 | 2035 | 877,354 | 43,529   | 5.0    |
| 충남 보령 | 2035 | 99,126  | 9,874    | 10.0   |
| 충남 논산 | 2035 | 119,000 | 19,874   | 16.7   |
| 충남 금산 | 2040 | 57,100  | 19,249   | 33.7   |
| 충남 태안 | 2035 | 79,378  | 8,002    | 10.1   |
| 전북 남원 | 2040 | 78,000  | 15,000   | 19.2   |
| 전북 김제 | 2040 | 88,937  | 11,304   | 12.7   |
| 전남 화순 | 2035 | 62,000  | 5,580    | 9.0    |
| 전남 영암 | 2040 | 71,000  | 25,000   | 35.2   |
| 경남 밀양 | 2040 | 114,000 | 2,400    | 2.1    |
| 충북 제천 | 2035 | 170,000 | 17,000   | 10.0   |
| 충남 아산 | 2040 | 650,000 | 78,000   | 12.0   |
| 충남 계룡 | 2035 | 53,600  | 1,745    | 3.3    |
| 충남 당진 | 2035 | 245,000 | 32,000   | 13.1   |

a/b(%) 평균: 22.1, 최대: 69.4, 최소: 2.1

주: 1) 음영은 상주인구 대비 비상주인구 비율 50% 이상 지자체.

2) 69개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 중 주간활동인구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주간활동인구 추계치를 제시하지 않은 도시·군기본계획 제외.

자료: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저자 작성.

## ○ 생활인구 개념 활용 사례 종합 및 도입 이슈

(생활인구 개념) 도시특성, 활동 목적,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상 생활인구의 개념

(주요 도입 이슈) 보편적 도입기준 마련, 여건변화 검토에 활용, 필수부문 설정 필요

## 04.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인구 개념 도입방안

### ○ (기본방향) 생활인구의 규모·범위 확대에 대응한 도시수용능력 내 효율적·합리적 도입 기반 마련

(배경) 우리는 인구감소, 저성장, 지방소멸 위기 외에도 인구의 생활행태 다변화, 일상이동 광역화 등 생활인구의 확대라는 새로운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원칙) 도시기본계획에의 도입 방법을 규정하여 새로운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그릇이 되도록 함으로써, 많은 지자체가 생활인구의 변화에 주목하게 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함

(기본방향) 지역 내 상주인구 외 생활인구가 점차 확대되고 확장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은 그 원칙인 도시의 인구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용기반을 제공해야 함

•가용토지자원, 환경용량, 재정규모, 적정 기반시설 규모 등 고려

그림 3 생활인구 개념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 ○ (개념·기준) 보편적 개념 및 도입 기준 마련

(기본개념) 도시기본계획의 생활인구 개념은 ‘일상’과 ‘일부 비정기적 방문’을 포함한 ‘활동인구’로 보는 것이 적합하며, 부문별 영향력 구분을 위해 상주인구와 비상주인구 구분이 기본

- (활동인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역 내 모든 인구유형을 생활인구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상주와 정기적 방문까지를 ‘일상’이라 지칭할 수 있고 ‘비정기적 방문’의 일부를 포함하여 ‘활동인구’로 보는 것이 타당
- 비상주인구가 해당 도시로 유입하는 데 따른 지속적인 영향력이 평가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상주인구와 비상주인구를 포함한 활동인구의 영향력에 대해 도시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도시관리방향 제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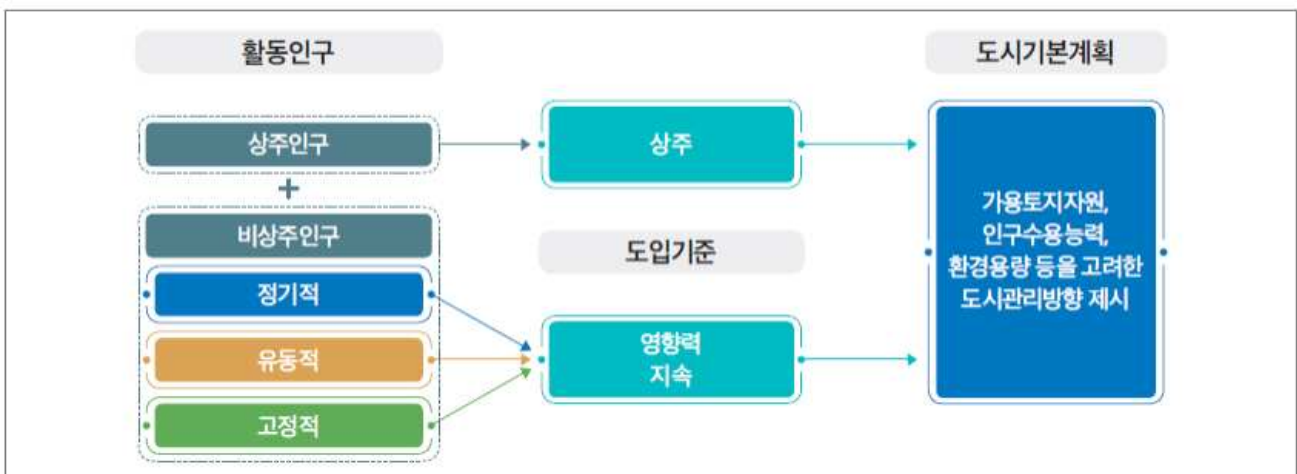
그림 4 도시기본계획의 활동인구 기본 개념



(인구특성) 상주인구는 지역 내 살고 있는 인구, 비상주인구는 인구유형에 따라 ‘정기적’, ‘유동적’, ‘고정적’인 특성을 가지며 그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활동인구를 감안하여 도시관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정기적) 통근·통학 등의 인구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며 지역 내에서 생활의 개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비상주인구임
- (유동적) 관광·업무·쇼핑·여가 등의 인구는 시간대별, 계절별 변동성이 크고 비정기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의 개념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비상주인구 유형들과는 달리, 특히 ‘유동적’인 특성에 대한 보정이 필요함
- (고정적) 군인·기숙사(직장, 학교) 입주자, 교육원 교육생 등은 장래 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수용가능인구와 수용률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도 현재와 같이 ‘고정적’인 규모를 유지한다고 전제되는 특성을 가짐

그림 5 도시기본계획에 도입되는 활동인구의 특성



(유형별 도입기준) 활동인구의 유형별로 그 특성이 달라 도시기본계획의 영역, 부문 별로 구분하여 도입되어야 하고 도입 시 해당 영역·부문의 지표와 전략수립에 활용 가능

(단계별 도입기준)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은 먼저 제도 내 개념과 도입방법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관련 시책들과 연계하여 단계적 도입 필요

○ (운용)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도입 장려

인구감소 지자체 또는 관광도시 위주의 활동인구 활용에서 벗어나, 장기적 추세를 감안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활동인구를 장기 발전방향 설정 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 상시적 도시변화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하여 정책이슈 발굴에 이용
- 정책이슈 발굴과 전략계획 목표, 공간전략 마련, 실효적인 생활권 세분화와 같은 도시기본계획의 발전방향과 전략 설정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 필요

그림 6 활동인구 유형별 이슈에 따른 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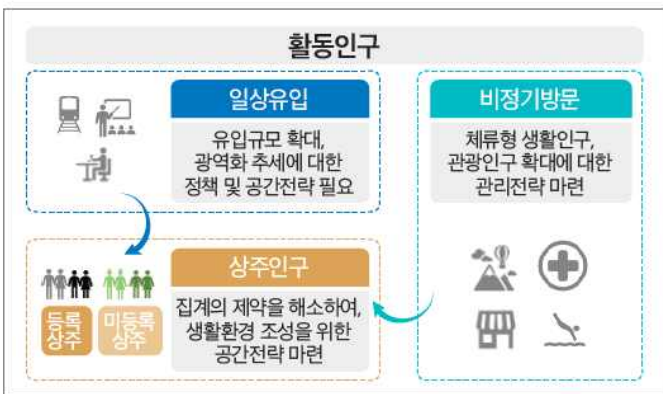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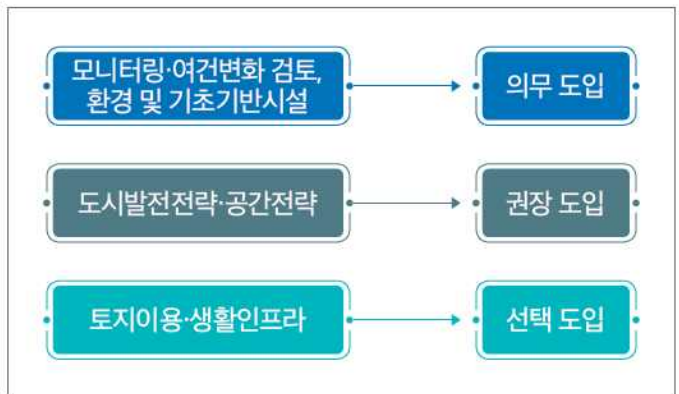


그림 7 활동인구 도시기본계획 영역별 도입방안



○ (제도) 부문별 의무·선택적 도입의 제도적 규정

기초조사·모니터링·여건진단과 공급·환경기초시설·환경용량 설정에는 활동인구 도입이 필수, 발전·공간전략 설정에는 필요시 권장, 토지이용·시설 용량 산정에는 선택적 도입

- 부문별 계획에서 활동인구를 의무적 또는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상에 부문별 활동인구 도입 규정 마련



- 부문별로 의무/선택 도입 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타 법령상의 관계 규정을 고려하고 관련 계획에서의 인구 개념 및 영향을 검토하여 연계하는 과정 필요
- 지역발전 정책사업으로 추진 시 국지적 토지수요 반영, 탄력적 도시계획시설 운영 우선 유도
- 활동인구 기반 정책사업이 가능함에 따라,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수단을 통해 적합한 입지에 배분 유도
- 관광인구, 체류형 생활인구 등은 연중 시기별 변동성이 크므로 기존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대응

### 3. 입법 예고

####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5.9.17. ~ 25.10.27

| <주요내용>                                                                                                                                                                                                                                                                                                                                                                                                                                                                                                                                                                       | <개정취지>                                                                                                                                                                                                                                                       |
|------------------------------------------------------------------------------------------------------------------------------------------------------------------------------------------------------------------------------------------------------------------------------------------------------------------------------------------------------------------------------------------------------------------------------------------------------------------------------------------------------------------------------------------------------------------------------|--------------------------------------------------------------------------------------------------------------------------------------------------------------------------------------------------------------------------------------------------------------|
| <p>○ 제60조의2제2항제2호 중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해외”를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 다만, 거주 의무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이후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p> <p>○ 제60조의2제2항제3호 중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주택건설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 다만, 거주 의무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이후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p> | <p>-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규정하면서 거주 의무 이행이 곤란하거나 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p> <p>-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거주 의무자가 시세 하락 손실액을 보전하고 거주 의무 미이행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입 비용이 인근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p> |

|                                                                                                                                                                                                                                                                                                                                                                                                                                                                                                                                                 |                                                                                                      |
|-------------------------------------------------------------------------------------------------------------------------------------------------------------------------------------------------------------------------------------------------------------------------------------------------------------------------------------------------------------------------------------------------------------------------------------------------------------------------------------------------------------------------------------------------|------------------------------------------------------------------------------------------------------|
| <p>○ 제6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다만, 거주 의무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이후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p> <p>9.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 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였으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주택이 매입되지 못한 경우</p> <p>○ 제60조의2제6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p> <p>2.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초과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공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p> | <p>- 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거주 의무 예외 사유와 기준을 확대.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5.9.10. ~ 25.10.20.

| <주요내용>                                                                                                                                                                                                                                                                                                                                                                                                                                                                                                                                                                                           | <개정취지>                                                                                                                                                                                                                                                                                        |
|--------------------------------------------------------------------------------------------------------------------------------------------------------------------------------------------------------------------------------------------------------------------------------------------------------------------------------------------------------------------------------------------------------------------------------------------------------------------------------------------------------------------------------------------------------------------------------------------------|-----------------------------------------------------------------------------------------------------------------------------------------------------------------------------------------------------------------------------------------------------------------------------------------------|
| <p>○ 제12조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p> <p>○ 별표 4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9.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곳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산림의 관할 행정청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벌채</p> <p>나. 산림의 관할 행정청이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p> <p>다. 산림의 관할 행정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3에 따른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p> | <p>-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국·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를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존 국·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p> <p>- 국·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가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적용되는 행위제한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

|                                                                                                                                                                                                                                                                                                                                                                                                 |  |
|-------------------------------------------------------------------------------------------------------------------------------------------------------------------------------------------------------------------------------------------------------------------------------------------------------------------------------------------------------------------------------------------------|--|
| <p>라. 산림의 관할 행정청이 「사방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산지사방사업</p> <p>마. 산림의 관할 행정청 및 공원관리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따른 방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죽목의 벌채</p> <p>바.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내에서 재난·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p> <p>사.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경된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p> <p>아. 「자연공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른 사업</p> |  |
|-------------------------------------------------------------------------------------------------------------------------------------------------------------------------------------------------------------------------------------------------------------------------------------------------------------------------------------------------------------------------------------------------|--|



## 4. 경기도 동향

### □ 경기도, 민간 복합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 [25.6.29]

-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 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올해 7월 중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 → 40%) 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이러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어 재개발 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이 가능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 기존 조합방식은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신탁회사, 리츠 등 민간전문업체 주도로 추진돼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민간업체 외 토지등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 사업 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 경기도 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내 81곳이다.
-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경기도 9일 용인·10일 고양에서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개최 [25.7.1]

- 경기도는 오는 9일 오후 5시 용인 포은아트홀, 10일 오후 5시 고양 백석별관에서 각각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1기 신도시 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용인 수지.구갈, 고양 탄현.화정 일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 영통과 안산 반월 지역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고려해 올 하반기에 지자체와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는 2024년도에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를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를 말한다. 물리적 노후화와 도시 기능 쇠퇴가 동반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며, 전국 111개소 중 경기도에는 27곳이 있다.
- 앞서 도는 1기 신도시 5곳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신속히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다른 노후계획도시에서도 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도는 판단했다.
- 정책 설명회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정책공감도를 높이하고자 경기도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 ▲노후계획도시 정비 비전 등을 직접 설명하고, 다른 전문가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사례 ▲정비사업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 등을 안내한다.
-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전할 수 있다.
-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도민 삶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5.7.1]

-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의결,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사업이다.
- 이번 조례안은 박명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안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참여 주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제공 ▲공동체 자생력 강화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무 지원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시군의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후관리 실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군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후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앞으로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난해까지 15개 시군 18곳 사업을 선정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도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된 바 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하며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기도형 사업이다.

## □ 경기도 수원·용인·GH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 [25.9.5]

-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 시행자와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2024년 12월 31일 준공된 사업이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총 1,078만 7천㎡ 규모, 3만 1,500세대를 공급한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협약서상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다.
- 그동안 개발 이익금을 활용한 대상 사업 선정, 활용 금액, 사업 우선순위 등 사업 시행자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사업이 준공된 현재는 잔여 개발 이익금에 대해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구 내 공공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을 요구하는 반면, 경기도는 개발 이익금의 배분이 아닌 도 주도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광교 지구 내 재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이에 도는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특히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사업 시행자 간 협의로 집행을 결정하는 방식 외 예산·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 경기도는 광교 개발 이익금을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체육 기반 시설(인프라) 조성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두고, 광교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은 지구 내 재투자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5. 용인시 동향

### □ 용인특례시의 새로운 도시 상징물(CI·BI 통합형) 선호도 조사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상징물(CI·BI 통합형) 개발을 위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에 진행하는 선호도 조사는 지난 1997년부터 사용한 심벌마크(CI)와 2004년 개발한 도시브랜드(BI)를 통합한 통합형 상징물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다.
- 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합한 상징물을 선정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시의 미래와 성장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을 완성할 방침이다.
- 시는 지난해 3월부터 디자인 공모전과 시민디자인단 운영 등 시민참여형 과정을 거쳐 상징물 후보안을 개발했다. 후보안 중 한 작품은 시민디자인단이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 동안 진행하는 선호도 조사는 용인특례시 공식 홈페이지([www.yongin.go.kr](http://www.yongin.go.kr))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아파트 미디어보드에 있는 네이버폼 설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또, 시청과 구청, 경전철과 지하철 역, 주요 관광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 참여자는 상징물 디자인 시안 3종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1종을 선택하면 된다. 조사는 ‘용인특례시 상징물 조례 제5조’에 따라 여론 수렴 절차로 진행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은 향후 상징물 관리위원회 및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
- 시 관계자는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도시의 가치와 방향성을 담은 중요한 상징”이라며 “이번 선호도 조사를 통해 도시브랜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시민과 소통해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

**새로운 상징물 디자인을**

선택해주세요!

**2025.6.12.(목) ~ 6.29.(일)**

여러분의 손으로 용인의 새로운 얼굴을  
함께 만들어 가요!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 증정

참여 QR코드



QR코드 스캔 후,  
링크 접속

A안



환호하는 사람의 모양을 모티브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 상징



B안



'O'를 모티브로 연결된 형태로  
조화로운 도시, 초연결도시 용인 표현



C안



영문 'Y'와 화살표로 미래를 선도하는  
반도체 첨단도시 상징



## □ 용인특례시, 시민과 함께 만든 28년 만의 새 얼굴, 통합 도시브랜드 선포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9월 27일(토) 제30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28년 만에 새롭게 정비된 통합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한다. 시는 10일에 열린 제2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통합 도시브랜드를 확정하였다.
- 새로운 통합 도시브랜드는 ‘110만 특례시 용인’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해 개발된 것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로 개발되었다. 시는 2024년부터 시민디자인단 운영, 디자인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안을 개발했으며, 1만8천여 명이 참여한 선호도 조사와 상징물관리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 새로운 통합 도시브랜드는 CI(심벌마크)와 BI(도시브랜드)를 일체형으로 정비한 것으로, ‘하나의 상징’ 안에 용인특례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용인의 ‘용(龍)’을 모티브로 한 중심 형상과 상·하단의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단의 원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글로벌 도시 용인을, 하단의 원은 첨단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을 상징한다. 중심 형상은 ‘용’ 글자를 형상화하여 첨단성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표현하는 동시에, 환호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아 활기찬 시민 중심 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 특히 색상 체계는 △창의성과 역동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자주색, △첨단 반도체 산업을 통한 미래도시의 위상을 상징하는 보라색,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한 청록색으로 구성되어, 역동적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 용인의 비전을 시각화했다.
- 시는 이번 선포를 계기로 도시브랜드를 행정 전반과 생활 속에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에 용인만의 차별화된 브랜드가치를 알리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새로운 도시브랜드는 행정의 상징을 넘어, 시민과 함께 키우고 지켜갈 용인다운 얼굴”이라며, “28년 만에 선보이는 도시 브랜드가 시민 모두의 자부심이 되고, 용인의 미래 도약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YONGIN SPECIAL CITY

## □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정식 서비스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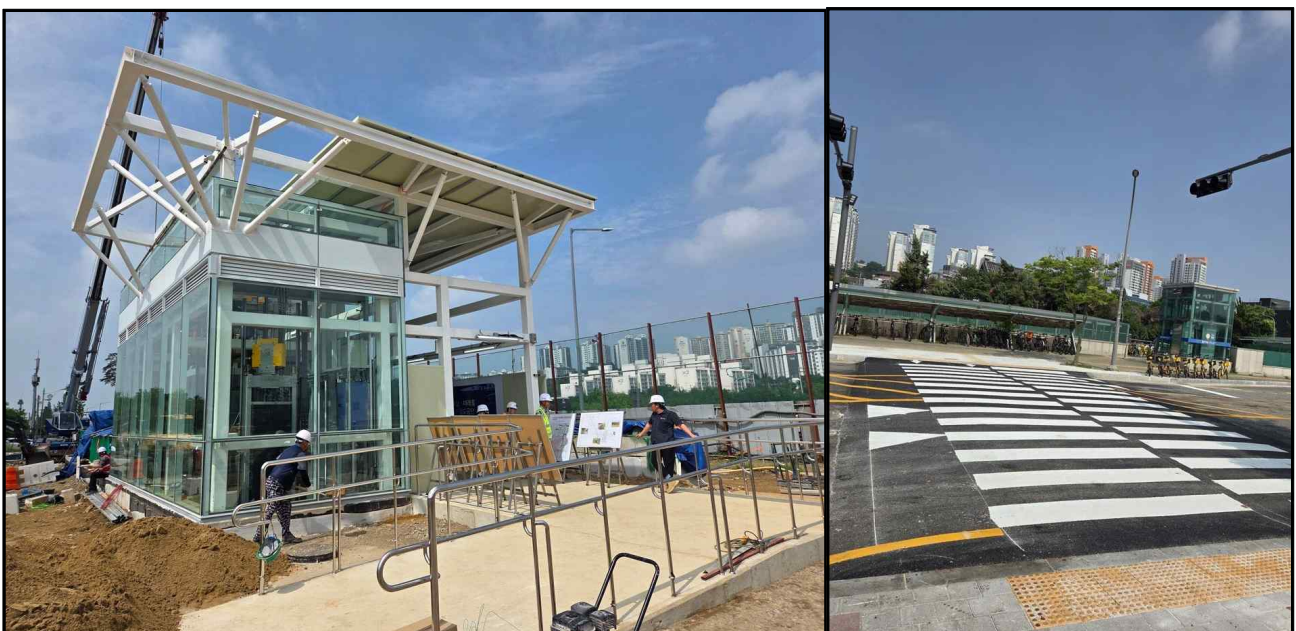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홈페이지가 1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http://uris.yongin.go.kr)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주요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데이터로 보는 신갈”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함해 주민들이 쉽게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 도시재생 관련 발행물과 사진·영상 자료를 게재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신갈오거리에 설치된 ▲순환자원회수로봇 ▲스마트교통쉼터 ▲태양광에너지 ▲AI 주차안내 ▲AI 신갈산책도우미(걸어용) ▲스마트전력 등의 장비에서 수집한 스마트 도시재생 데이터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 공개했다.
- 신갈도시재생플랫폼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신갈도시재생플랫폼’을 검색하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
- 시는 신갈도시재생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하고, 처인구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스마트도시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신갈오거리도시재생플랫폼 사업은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 용인특례시, GTX-A 구성역 보행 안전 시설 완료,공기질 개선 조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GTX-A 구성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설치를 27일 완료하고, 역사 내 실내공기질도 법적 기준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시민 이용 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시는 GTX-A 구성역 개통 이후 4번 출구 가까이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시민들이 종종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횡단보도를 만들기로 결정한 뒤 최근 설치를 완료했다.
-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공단과의 협의가 다소 늦어져서 시가 직접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후 시는 경찰서와의 협의(4월 3일)와 철도공단과의 공식 협의(4월 7일 요청, 6월 23일 완료)를 모두 마쳤다.
-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횡단보도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 시는 구성역 역사 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일도 하고 있다.
- 송풍기 가동, 대형 공기청정기 10대 설치, 실내 물청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관련 조치 이행 여부도 지속 점검하고 있다.
- 시는 지난 5월 15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성역 실내 공기질에 대한 합동 점검과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 6월 27일 12시 기준 GTX-A 구성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2.0\mu\text{g}/\text{m}^3$ 로 환경부 기준치( $50\mu\text{g}/\text{m}^3$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6월 30일 구성역 5번 출구가 개통됨에 따라 구성역 공기질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5번 출구의 엘리베이터 추가 가동 등을 위한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기질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시는 5번 출구 구간에 대해 물청소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송풍기 가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 시는 구성역 5번 출구 개통을 앞두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5번 출구와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임시 보행로를 개설하고, 출구 인근에 82면 규모의 임시주차장도 마련했다. 야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과 CCTV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 구성역 5번 출구와 흥덕·수지 지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도 30일 5번 출구 개통일에 맞춰 운행을 시작했다.
- 이상일 시장은 “GTX-A 구성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인 만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가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고 공기의 질도 잘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곳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 의견도 들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6월 30일 개통된 구성역 5번 출구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위치해 기흥구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역할도 하고 있다.



## 6. 용인시정연구원 이슈 리포트

### <용인시정연구원>

#### □ RE100 대응을 위한 반도체 도시 용인의 지속가능 에너지 전략

#### I.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RE100 개요

##### 1) 탄소규제 확산에 따른 글로벌 이니셔티브 현황

##### ○ 탄소규제의 전 지구적 확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 속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다양한 탄소배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
-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는 2022년 시행된 미국의 기후법안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이 법안의 핵심이며, 친환경차 세액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및 Capex(시설투자)지원금 등의 규정이 포함됨
- (CBAM)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은 EU에서 제안한 정책으로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탄소배출량이 이전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역 관세
- (ETS)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는 2005년 EU에서 최초로 출범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정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규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기업(또는 기관)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기반 접근의 제도
- (CII) 탄소집약도 지수(Carbon Intensity Indicator, CII)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도입한 탄소배출 규제 제도로, 선박이 운항 중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 배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배출 요금을 부과하고 2030년까지 선박 부문 배출량을 2008년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요구가 점차 강화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는 흐름 확산
  - (FMC) 퍼스트무버연합(First Movers Coalition, FMC1))은 세계경제포럼 및 미국 정부주도 하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하여 발표한 민간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8개 주요분야(철강, 항공, 화학 등)의 기업들이 탄소감축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SBTi)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SBTi2))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과학적 기반으로 설정하기 위한 지침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UN 글로벌 콤팩트,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세계자연기금(WWF) 협력 하에 2015년 설립
  - (RE100) EP100(Energy Productivit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성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 경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 (RE100)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대표적인 글로벌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로, 이를 계기로 기업권 전반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확산되는 추세
  -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니셔티브

## 2) 자발적 참여를 통한 100% 재생에너지 전환, RE100

### ○ RE100 소개 및 개요

- RE100 캠페인은 비영리 국제 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가 연합하여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2014년 뉴욕 기후주간(Climate Week NYC 2014)을 통하여 발족

RE100

CLIMATE  
GROUP



출처 : RE100 공식 홈페이지 발췌

-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참여 글로벌 이니셔티브
  -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계별 목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것을 권고
- RE100은 정부의 강제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자율적 참여 이니셔티브지만, 다수의 기업들이 ESG 경영 및 탄소배출권 대응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입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 및 탄소세(Carbon Tax) 등의 탄소배출 관련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기업들은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직접적인 비용으로 인식하기 시작
- 우리나라는 비영리 단체인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이하 'SFOC')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이하 'KoSIF')이 The Climate Group의 대한민국 현지 파트너로 활동하며 RE100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 수행

### 3) RE100 추진 필요성

####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RE100 대응

-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기관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기후 대응 실적을 주요 투자 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RE100 가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표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9.67% 수준으로(2023년 기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당해야 하는 RE100 달성이 국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우려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RE100에 가입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에 도태할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
- 2014년 이래 애플(Apple)의 모든 데이터센터는 100% 재생에너지에 의해 가동되고 있으며, 본사 건물인 Apple Park는 북미 최대 규모의 LEED 인증 건물로 17MW 옥상 태양광 설비 및 4MW의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활용

[애플 본사(Apple Park) 옥상 태양광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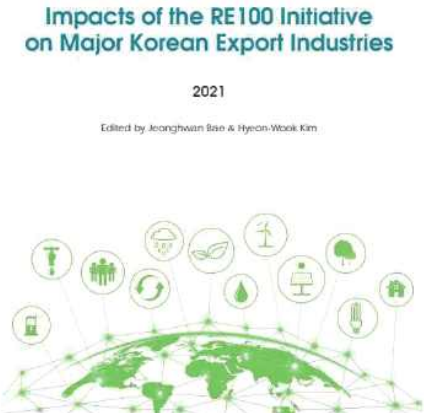


출처 : 애플(Apple) 공식 홈페이지 Newsroom<sup>6)</sup> 발췌

- 또한 애플(Apple)은 2020년 7월 부품의 조달부터 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전 사업활동에 대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20개 이상의 기업(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포스코인터네셔널 등)이 애플 공급사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됨
-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이 발표한 ‘Carbon Dated 보고서, 20219)’에 따르면 글로벌 대기기업들은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급업체 중 약 35%와 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 중 약 89%의 기업은 전 세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의 30%를 줄이라는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한 우리나라 공급업체의 잠재적 수출 손실규모는 2030년 최대 1,425억 달러(한화 약 20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미 2020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대기업 중 약 15%에 해당하는 기업이 탄소중립 계획이 미흡한 공급업체와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5년 약 7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2022년 기준), 응답 기업 중 14.7%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으며,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은 시점은 2030년 이후(38.1%), 2025년까지(33.3%), 2026-2030년(9.5%)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 「Impacts of the RE100 Initiative on Major Korean Export Industries」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산업 수출액 감소(자동차15%, 반도체 29.8%, 디스플레이 패널 40%)가 예상되어, RE100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는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여부에 따른 산업 수출액 변화]

|                                                                                                                                                                                                                                  |       |                             |                           |
|----------------------------------------------------------------------------------------------------------------------------------------------------------------------------------------------------------------------------------|-------|-----------------------------|---------------------------|
|  <p>Impacts of the RE100 Initiative<br/>on Major Korean Export Industries</p> <p>2021</p> <p>Edited by Jeonghwan Seo &amp; Hyeon-Wook Kim</p> | 산업    | RE100 이니셔티브<br>미참여 시 수출액 변화 | RE100 이니셔티브<br>참여시 수출액 변화 |
|                                                                                                                                                                                                                                  | 자동차   | -15%                        | -7.67%                    |
|                                                                                                                                                                                                                                  | 반도체   | -29.8%                      | -9.16%                    |
|                                                                                                                                                                                                                                  | 디스플레이 | -40%                        | -22.28%                   |

※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분석 결과는 향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 강도가 현재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참고 필요

출처 : RE100 공식 홈페이지 발췌

## II. 국내외 RE100 추진 현황

### 1) RE100 추진 주요 연혁

#### ○ RE100 발족부터 현재까지 추진 경과

- (2014년 9월) The Climate Group이 CDP와 협력 하에 RE100의 첫 발족 및 공식 홈페이지 출범
- (2016년 4월) 첫 RE100 기술기준(RE100 Technical Criteria) 발표를 통하여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개정판 발표(2024년 4월 기준)
- (2017년 1월) The Climate Group이 RE100 가입기업 정식 모집 시작
- (2021년 5월) 국내 탄소중립 및 에너지 관련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RE100 협의체\*」발족

\* 국내 RE100 참여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사)한국에너지융합협회(KOECA)가 운영하는 협의체

- (2021년 9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 이행 방안으로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지분참여, △자가 발전설비설치를 제시
- (2023년 3월) The Climate Group 공동대표 Oliver Wilson 한국 방문\* 및 RE100 한국형 정책 제언 발표 대회 개최

\* Oliver Wilson 대표는 한국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장애요인 및 장벽을 없애지 않는 한, 현대 한국 정부의 에너지 계획으로는 RE100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임을 지적

- (2023년 11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한 123개 국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제사회 전역에 걸쳐 RE100의 시대적 요구 증가
- (2024년 3월) The Climate Group과 CDP가 공동 발간하는 연례보고서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을 통해 RE100 현황 및 국가별 이행실적 공개

- (2025년 2월) The Climate Group은 한국 정부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상향할 것을 촉구하면서, 낮은 목표가 신속한 탄소배출 감축은 물론이며 기업 투자 촉진 및 글로벌 시장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 2) 글로벌 RE100 추진 현황

### ○ 글로벌 RE100 참여기업 가입 현황

- 현재 기준(2025년 4월) 국가별 RE100 가입기업의 수는 미국이 96개로 1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36개의 기업이 가입하여 대만과 함께 전 세계 공동 4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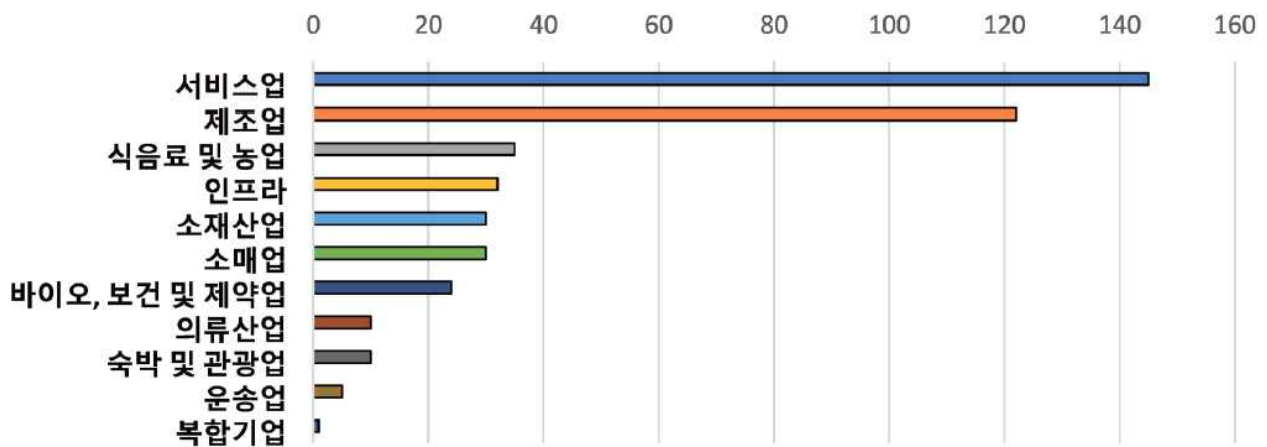
[RE100 참여 기업수 상위 5개국의 가입 증가율]

|          |  미국 |  일본 |  영국 |  대만 |  한국 |
|----------|----------------------------------------------------------------------------------------|----------------------------------------------------------------------------------------|----------------------------------------------------------------------------------------|------------------------------------------------------------------------------------------|------------------------------------------------------------------------------------------|
| '21년 12월 | 85개사                                                                                   | 56개사                                                                                   | 44개사                                                                                   | 10개사                                                                                     | 9개사                                                                                      |
| '25년 4월  | 96개사                                                                                   | 92개사                                                                                   | 50개사                                                                                   | 36개사                                                                                     | 36개사                                                                                     |
| 증가율      | 13%                                                                                    | 64%                                                                                    | 14%                                                                                    | 260%                                                                                     | 300%                                                                                     |

출처 : RE100 공식 홈페이지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 산업 분류에 따른 글로벌 RE100 가입기업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전체 RE100 가입 기업 444개 중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SK텔레콤, KT그룹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기업이 33%(145개 기업)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를 이어 제조업 27%(122개 기업), 식품업 및 농업 8%(35개 기업), 인프라 산업 7%(32개 기업) 등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산업분류별 글로벌 기업 RE100 가입 분포]



출처 : RE100 공식 홈페이지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 ○ 글로벌 RE100 추진 현황

- (미국) 구글(Google)은 2017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면서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으로 글로벌 전력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하여 타사 및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를 채택하도록 독려
- (스웨덴) 이케아(IKEA)는 북유럽 지역에서 이미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고, 고객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가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
- (일본) 파나소닉(Panasonic)은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영국에 위치한 전자레인지 생산 공장을 100% 재생에너지 운영 시설로 전환하였으며,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등을 통합하여 공장 전체의 전력을 공급
- (영국) 영국은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다수의 기업들이 RE100 목표를 달성하거나 근접한 상황이며, 특히 BT그룹은 이미 100% 재생 에너지 전환을 완료하여 지속적 유지와 확장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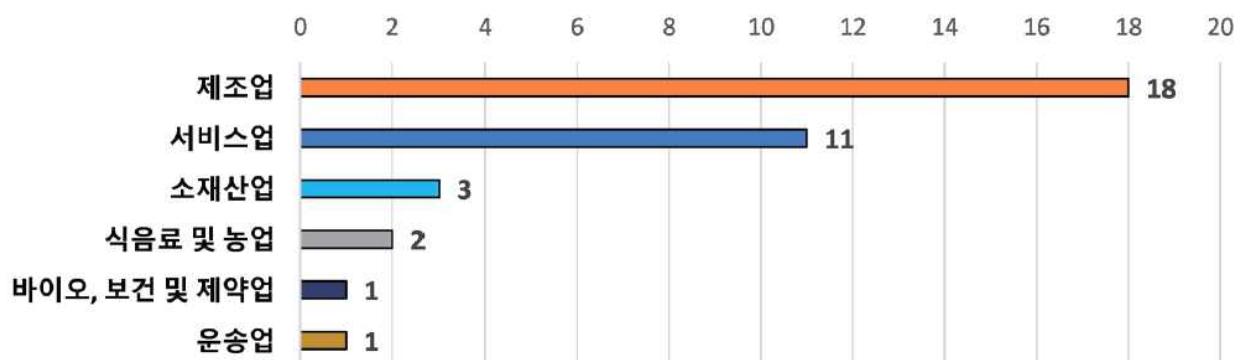


### 3) 대한민국의 RE100 추진 현황

#### ○ 국내 RE100 참여기업 가입 현황

- 우리나라는 SK그룹 내 7개 자회사가 2020년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하여 활동중이며, 이를 이어 LG그룹 자회사, 현대자동차그룹 자회사, 삼성전자 등 총 36개의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이 참여 중
- 산업 분류에 따른 국내 RE100 가입기업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50%(18개기업), 서비스업이 31%(11개 기업)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전 세계의 산업분류별 RE100 가입기업 분포에 따르면 서비스업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반영되어 제조업 분야 기업 비율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산업분류별 국내 기업 RE100 가입 분포]



출처 : RE100 공식 홈페이지 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 ○ 국내 회원사 RE100 추진 현황

-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전사 사업장 전력 사용량의 29.6%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였으며, 해외사업장(미국 산호세, 중국 우시 및 충칭)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완료
-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사업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약 60%를 달성하였으며, 해외사업장(미국, EU)은 재생에너지 간접 구매(REC 구매) 방식을 활용하여 RE100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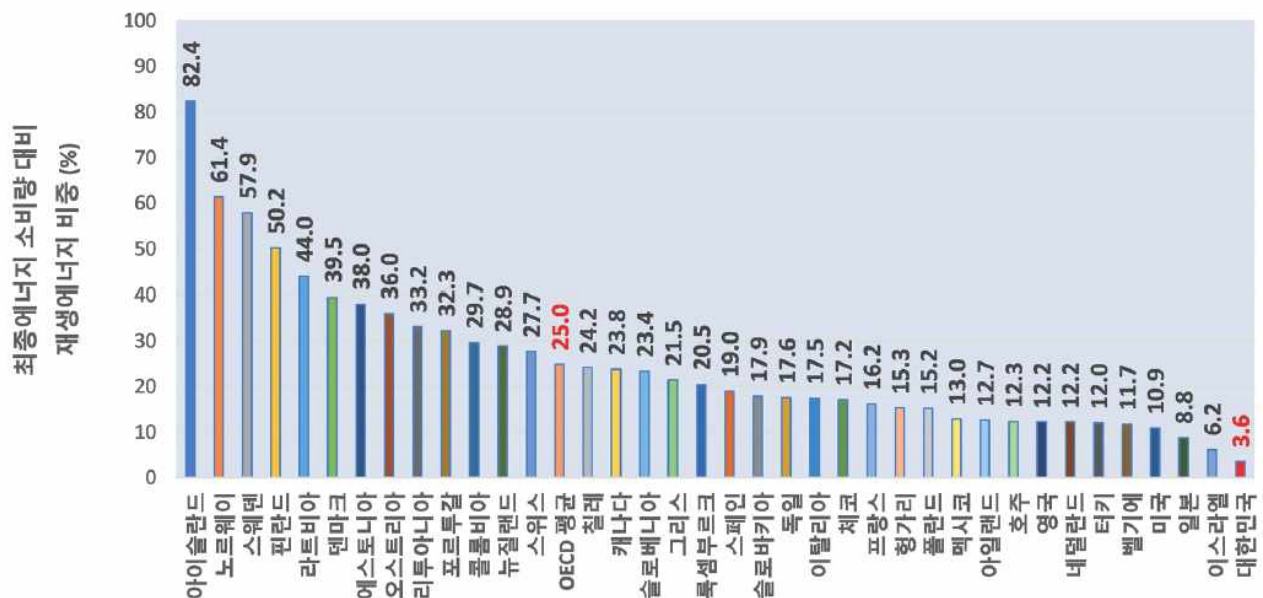
- (삼성전자) 국내 최대 전력 사용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에 대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말 기준 전 세계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8,704GWh로 연평균 약 59%씩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2018-2022년 기준)

#### 4) 국내 RE100 추진 한계점 및 장애요소

##### ○ OECD 회원국 및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3.6%에 그쳐,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로 평가됨
-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25%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 대비 약 7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며, 주로 아이슬란드(82.4%), 노르웨이(61.4%) 및 스웨덴(57.9%)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보임

[OECD 회원국 최종에너지 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2021년 기준]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5년 4월 업데이트 데이터 기준)

## ○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글로벌 인식

-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가 국내 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조달 현황 및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제도 효율성 및 공급량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
- The Climate Group에 따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국 회원사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
-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에너지 시장에 투자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부족한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 높은 비용, 제한된 공급 및 계통 경직성 등을 지적

[글로벌 RE100 가입기업의 국가별 장애요소 평가 결과]

| 장애요소                                 | 국가 |  |  |  |  |  |  |  |  |  |  |
|--------------------------------------|----|-------------------------------------------------------------------------------------|-------------------------------------------------------------------------------------|-------------------------------------------------------------------------------------|-------------------------------------------------------------------------------------|-------------------------------------------------------------------------------------|--------------------------------------------------------------------------------------|---------------------------------------------------------------------------------------|---------------------------------------------------------------------------------------|---------------------------------------------------------------------------------------|---------------------------------------------------------------------------------------|
|                                      |    | 한국                                                                                  | 일본                                                                                  | 싱가포르                                                                                | 대만                                                                                  | 중국                                                                                  | 인도                                                                                   | 미국                                                                                    | 러시아                                                                                   | 사우디                                                                                   | 베트남                                                                                   |
| 높은 비용 또는 제한된 공급                      |    | 27                                                                                  | 24                                                                                  | 31                                                                                  | 37                                                                                  | 4                                                                                   | 5                                                                                    | 5                                                                                     | 6                                                                                     | 5                                                                                     | 2                                                                                     |
| 조달 수단(옵션) 부족                         |    | 32                                                                                  | 14                                                                                  | 12                                                                                  | 9                                                                                   | 18                                                                                  | 10                                                                                   | 7                                                                                     | 7                                                                                     | 8                                                                                     | 8                                                                                     |
| 비효율 또는 마찰 요인<br>(소규모 수요)             |    | 12                                                                                  | 7                                                                                   | 10                                                                                  | 9                                                                                   | 2                                                                                   | 1                                                                                    | 7                                                                                     | 3                                                                                     | 2                                                                                     | 0                                                                                     |
| 규제 장벽                                |    | 8                                                                                   | 8                                                                                   | 0                                                                                   | 2                                                                                   | 7                                                                                   | 9                                                                                    | 2                                                                                     | 4                                                                                     | 1                                                                                     | 2                                                                                     |
| 비효율 또는 마찰 요인(기타)                     |    | 2                                                                                   | 10                                                                                  | 2                                                                                   | 1                                                                                   | 1                                                                                   | 5                                                                                    | 2                                                                                     | 0                                                                                     | 0                                                                                     | 0                                                                                     |
| 비효율 또는 마찰 요인<br>(임대-인차인 간)           |    | 3                                                                                   | 8                                                                                   | 4                                                                                   | 1                                                                                   | 3                                                                                   | 5                                                                                    | 7                                                                                     | 1                                                                                     | 1                                                                                     | 0                                                                                     |
| 신뢰성 우려                               |    | 4                                                                                   | 1                                                                                   | 0                                                                                   | 0                                                                                   | 4                                                                                   | 3                                                                                    | 2                                                                                     | 1                                                                                     | 1                                                                                     | 1                                                                                     |
| 기업 내부사유                              |    | 0                                                                                   | 1                                                                                   | 2                                                                                   | 1                                                                                   | 0                                                                                   | 1                                                                                    | 2                                                                                     | 0                                                                                     | 0                                                                                     | 0                                                                                     |
| 관련 데이터의 부족                           |    | 5                                                                                   | 3                                                                                   | 0                                                                                   | 0                                                                                   | 3                                                                                   | 3                                                                                    | 2                                                                                     | 0                                                                                     | 0                                                                                     | 0                                                                                     |
| 해당 장애요소를 지정한 기업 수                    |    | 66                                                                                  | 49                                                                                  | 48                                                                                  | 43                                                                                  | 30                                                                                  | 24                                                                                   | 24                                                                                    | 17                                                                                    | 14                                                                                    | 11                                                                                    |
| 해당 국가/지역에서 활동 중이며<br>장애요소를 보고한 기업 비율 |    | 40%                                                                                 | 24%                                                                                 | 27%                                                                                 | 33%                                                                                 | 12%                                                                                 | 13%                                                                                  | 9%                                                                                    | 21%                                                                                   | 21%                                                                                   | 9%                                                                                    |

출처 : RE100 연례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전 세계 RE100 가입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각 수치는 해당 장애요소를 언급한 기업 수를 의미

- RE100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외 RE100 가입기업의 약 40%가 한국을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은 RE100 회원사들이 지목한 가장 진입이 어려운 도전 시장으로 평가
- 국제 무역 환경에서 탄소규제가 급속히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RE100이 비관세 장벽에 준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내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

### III. 한국형 RE100 및 용인시 에너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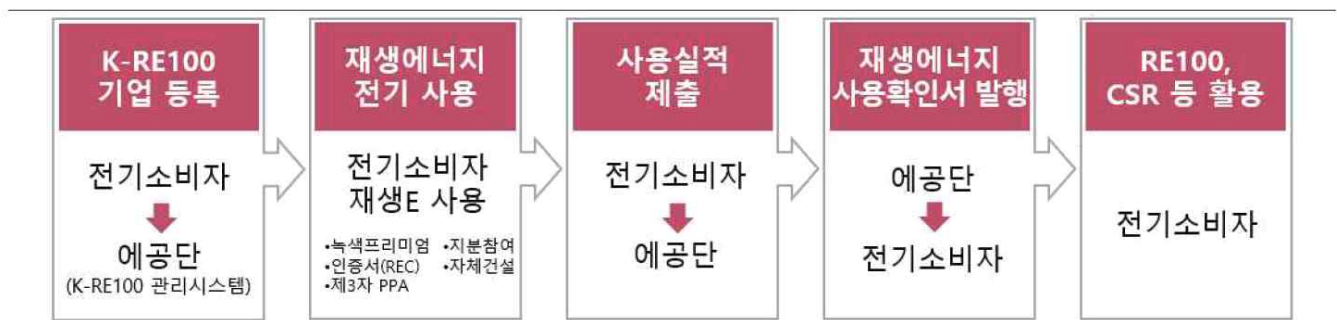
#### 1) 국가 및 지방정부의 RE100 한계점 극복 노력

##### ○ K- RE100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방안을 포함한 전력수급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2030년 30.2%에서 21.6% 하향 조정했으며, 2025년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서는 2030년 21.7%를 유지하되 2038년까지 33%로 확대하는 계획 제시
-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하향 조정된 이후, 시민사회와 산업계에서는 재생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 설정된 비중만으로 도 기업 수요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 또한, 우리 정부는 2023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을 위한 구체적 기반 마련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RE100 가입기업 중심의 협력체 (Alliance)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재정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 등 ‘RE100 이행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발표
- 국제적으로 RE100 참여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한국형 RE100 제도(K-RE100)를 도입하여 운영 중

- 해당 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운영하며, 전기 소비자가 K-RE100 시스템을 통 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제출하고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
- K-RE100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며, 다양한 이행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RE100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에 중점

#### [K-RE100 참여 절차]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및 RE100정보플랫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 ○ 경기도형 RE100, 「경기 RE100」 추진

- 특히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 부터 RE100 이행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본격 추진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하여 4대 방향 (△경기도가 선도하는 공공 RE100, △수출장벽을 넘어서는 기업 RE100, △기회소득을 창출하는 도민 RE100, △산업&에너지 융합 모델 산업 RE100) 및 13개 세부 전략과제를 중점 으로 RE100 추진13)
-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RE100'은 기존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가 추진 하고 있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지역 전환 속도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 기존 RE100의 철학(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역 정책으로 변형하여 적용한 확장 모델
  - 경기도형 RE100인 '경기 RE100'은 공공, 산업단지, 기업, 도민 등 그 대상을 확장하여 추진하며 RE100을 지속가능한 지역 에너지 구조 전환 전략으로 해석하여 응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RE100과는 다른 성격을 가짐



### [기존 RE100 이니셔티브와 경기RE100 차이]

|       | 기존 RE100         | 경기 RE100              |
|-------|------------------|-----------------------|
| 주체    | 민간기업 중심          | 공공 + 민간 포괄            |
| 운영    | 민간 글로벌 이니셔티브     | 지방정부 주도 정책            |
| 참여 방식 | 기업 자발적 참여 선언     | 공공 리드 → 민간 유도 → 도민 참여 |
| 목표 성격 | ESG, 기업 지속가능성 증진 | 지역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목표 포함  |

출처 : 저자 작성

- 특히 경기도 내 산업단지는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어 전체 전력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기RE100 활발히 추진
  - 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전력 사용량은 약 140.5TWh로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25.6%에 해당하는 전력을 사용했으며, 이 중 49.4%에 해당하는 69.4TWh가 제조업 부문에서 소비되어 산업단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중요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추진은 크게 ‘투자 수익형’과 ‘자가 소비형’으로 구분하며, 도내 주요 추진사업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투자수익형) 안산시 자동차부품제조업(1,500kW), 군포복합물류(7,400kW), 파주시 금속가구제조업(802kW), 여주시 의류제조업(1,601kW) 등
  - (자가소비형) 시흥 국가산단 제지제조업(499kW), 시흥 한샘 제1공장(202kW), 동탄 볼보코리아 사업장(412kW), 파주 LG이노텍 공장(1,384kW) 등

## 2) 용인시 에너지 수요 및 소비 현황

### ○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르는 대규모 전력 수요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로 20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 360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 명칭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및 남사읍 일원
  - 면적 : 약 728만m<sup>2</sup> (약 220만 평)
  - 지정일 :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

### [용인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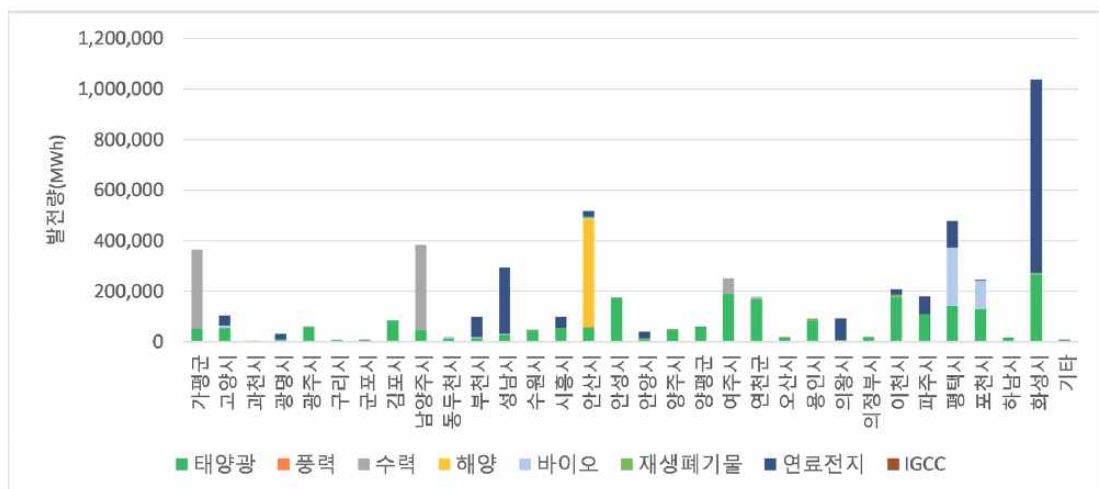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시설로 반도체 생산공장(Fab) 6기, 발전소 3기 및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약 160 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400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긍정적 효과 이면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2050년 즈음엔 최대 10GW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력위기 초래 예상
  - 한국전력 지역별 전력판매 현황 자료(2022)를 기준으로 경기도는 연평균 약 16GW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10GW의 전력 수요를 예상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의 전력 소비량이 도 전체 연간 소비량의 약 62.5%에 달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수요가 경기도 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용인시는 향후 전력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재생에너지 도입 대책이 시급한 상황

○ 에너지 소비 중심 도시, 용인시

- 경기도 내 시·군 에너지 자립률을 분석한 결과 용인시의 에너지 자립률은 약 0.31%인 것으로 분석되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위에 해당(2022년 기준)
  - 지역 에너지 자립률은 지역 전체 에너지 소비량 대비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발전량)을 나타내며, 이는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지역 전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나타낸 지표
  - 용인시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527천으로 도내 3위를 차지할 만큼 에너지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2,120MWh로 17위를 차지하여 소비 수준 대비 현저히 낮은 에너지 자립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불균형은 용인시가 에너지 소비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
- 특히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강화와 자립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
- 용인시는 향후 조성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RE100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가 필수적이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구축과 연계한 전략적 인프라 투자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22년 기준]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통계발전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용인시의 노력

- 용인시는 2025년 ‘경기RE100 선도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도비 6억300만원을 확보하고, 총 2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과 도시 경관 개선을 겸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 본 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RE100 달성 및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목표로, 포 곡읍 마성리 교통광장을 포함한 3개소에 총 1MW 규모의 경관 개선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
-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친환경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발전 전력은 관내 반도체 기업 등에 공급되어 RE100 실현 기반으로 활용될 계획

#### [관련 보도자료(좌) 및 2024 경기RE100 선도사업 선정지역 전경(우)]

| 보 도 자 료 (7) 용인특례시 |               |      |                    |
|-------------------|---------------|------|--------------------|
| 제출일자              | 2025.4.11.(금) | 담당부서 | 미래성장전략과            |
| 제출인               | 2             | 담당자  | 박영준(031-6193-3670) |
| 사건자료              | □             | 담당자  | 이종수(031-6193-2740) |
| 참고자료              | X             | 담당자  | 김현영(031-6193-2727) |

**용인특례시, 경기RE100 선도사업 2년 연속 선정**  
 - 도비 6억 300만원 확보...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추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열)가 '2025년 경기RE100 선도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도비 6억 3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총 21억 6천만원을 투입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과 도시 경관 개선을 겸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Renewable Electricity)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RE100 달성 및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목표로, 포곡읍 마성리 교통광장을 비롯한 3곳에 총 1MW 규모의 경관개선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설치 대상지는 ▲마성리 교통광장(공공발전소, 미디어 빌딩), ▲시민체육센터 주차장(경관형 캐노피 발전소), ▲기흥호수 조형경관길 건물 상부(시민참여형 발전소) 등이다.



출처 : 용인시청 홈페이지(17)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에서 용인시 6년 연속 선정 및 국비 확보 성과
- 2023년 공모(2024년 사업 대상)에서 용인시는 5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8억 2441만 원을 확보, 전년도 대비 29.8% 증가한 예산 규모 달성
-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동부동, 유림동, 원삼면, 백암면 일대 257곳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937kW, 지열 332.5kW, 태양열 집열판 18m<sup>2</sup> 설치

- 이를 통해 연간 약 1,570MWh의 에너지 생산 기반을 조성, 에너지 취약 지역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실현
- 2024년 공모(2025년 사업 대상)에서는 최우수 등급(A)을 획득하며 6년 연속 공모 선정에 성공
- 국비 10억5329만원을 확보하고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처인구 포곡읍, 양지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에서 용인시 6년 연속 선정 및 국비 확보 성과
- 국비 10억5329만원을 확보하고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처인구 포곡읍, 양지면, 동부동 일대 261곳에 태양광 980kW, 지열 542.5kW, 태양열 76㎡ 설치 예정
- 민선8기 공약에 따라 처인구 에너지 취약지역 중심의 지속적인 설비 확대 추진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민간보급 확대 및 전기 요금 절감 실현
- 용인특례시는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총 90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비의 80%를 선착순 지원(총 예산 1억4600만원 편성)
-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누적 464가구 지원 실적 보유
- 공동주택·단독주택 베란다 및 옥상에 설치 가능한 소형 태양광 패널로, 1,000W 설 비 기준 월평균 105kWh 전력 생산 가능

### [관련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3) 용인특례시**

| 제공일자 | 2023.11.14(화) | 담당부서 | 신성장전략과            | 담당자 | 신성장전략과            | 연락처 | 남태원(031-324-3670) | 보도일시 | 2023.11.14(화) |
|------|---------------|------|-------------------|-----|-------------------|-----|-------------------|------|---------------|
| 매수   | 2             | 신청장소 | 신성장전략과            | 신청처 | 이종수(031-324-2740) | 신청처 | 이종수(031-324-2740) | 제출처  | 제출처           |
| 사전자료 | ○             | 신청장소 | 신성장전략과            | 신청처 | 이종수(031-324-2740) | 신청처 | 이종수(031-324-2740) | 제출처  | 제출처           |
| 참고자료 | X             | 담당자  | 이종수(031-324-2732) | 담당자 | 이종수(031-324-2732) | 담당자 | 이종수(031-324-2732) | 제출처  | 제출처           |

용인특례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 8억여원 확보

- 산자부 주관 공모...전년 대비 29.8% 증가 내년 처인구 257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441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받았던 6억 3500만원에 비해 29.8% 증가한 것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처인구 일대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을 구체화할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내년 총사업비 26억원을 들여 처인구 동부동과 유원동, 원삼면과 백암면 일원 등 257곳의 주택과 일반건물 등에 태양광 발전 937kW 설비와 지열 발전 설비 332.5 kW, 태양열 집열판 18㎡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발전설비를 가동하면 연간 약 1570MWh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보 도 자 료 (1) 용인특례시**

| 제공일자 | 2024.10.15(화) | 담당부서 | 미래성장전략과            | 담당자 | 미래성장전략과            | 연락처 | 남태원(031-6193-3670) | 보도일시 | 2024.10.15(화) |
|------|---------------|------|--------------------|-----|--------------------|-----|--------------------|------|---------------|
| 매수   | 2             | 신청장소 | 미래성장전략과            | 신청처 | 이종수(031-6193-2740) | 신청처 | 이종수(031-6193-2740) | 제출처  | 제출처           |
| 사전자료 | ○             | 신청장소 | 미래성장전략과            | 신청처 | 이종수(031-6193-2740) | 신청처 | 이종수(031-6193-2740) | 제출처  | 제출처           |
| 참고자료 | X             | 담당자  | 정서호(031-6193-2732) | 담당자 | 정서호(031-6193-2732) | 담당자 | 정서호(031-6193-2732) | 제출처  | 제출처           |

용인특례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최우수'...국비 10억 5329만원 확보

- 6년 연속 선정 쾌거...내년 총 30억원 들여 처인구 261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국비 10억 5329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평가 등급을 A-E 등급으로 나뉘어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데 시는 최우수 등급(A)을 받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한 데다 올해까지 6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고 6년 연속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년간 사업 추진 실적이 좋은 데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0억5329만원을 포함해 총 30억원을 들여 처인구 포곡읍·양지면·동부동 일원 주택과 일반건물 등 261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 980kW와 지열 발전 설비 542.5kW, 태양열 집열판 76㎡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공모에 참여한 2020년

**보 도 자 료 (6) 용인특례시**

| 제공일자 | 2025.4.1(화) | 담당부서 | 미래성장전략과            | 담당자 | 미래성장전략과            | 연락처 | 박영숙(031-6193-3670) | 보도일시 | 2025.4.1(화) |
|------|-------------|------|--------------------|-----|--------------------|-----|--------------------|------|-------------|
| 매수   | 1           | 신청장소 | 미래성장전략과            | 신청처 | 이종수(031-6193-2740) | 신청처 | 이종수(031-6193-2740) | 제출처  | 제출처         |
| 사전자료 | ○           | 신청장소 | 미래성장전략과            | 신청처 | 이종수(031-6193-2740) | 신청처 | 이종수(031-6193-2740) | 제출처  | 제출처         |
| 참고자료 | X           | 담당자  | 정서호(031-6193-2732) | 담당자 | 정서호(031-6193-2732) | 담당자 | 정서호(031-6193-2732) | 제출처  | 제출처         |

용인특례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진행

- 올해 90가구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80% 지원...월 최대 3만 2000원 전기요금 절감 기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2월 12일까지 9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하기 위해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2020년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5년 동안 약 464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가정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나 경기도 주택태양광 사업으로 3kW 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한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미니태양광은 1000W 설비 기준 월평균 105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전력을 월 400kWh 이상 사용해 수전제 3단계 적용을 받는 가구는 최대 3만 2000원, 월 200~400kWh를 사용하는

출처 : 용인시청 홈페이지<sup>17)</sup>



- 또한 용인시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응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
- 용인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18년 기준배출량인 6,321천톤CO<sub>2eq</sub> 대비 2030년까지 40%에 해당하는 2,537CO<sub>2eq</sub>의 온실가스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
- 국가 및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제시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반영하여, 용인시의 도시성장 구조, 산업 특성, 에너지 소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제시
- 기본계획은 총 108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연차별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태양광 설비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전략적으로 RE100 달성에 접 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IV. 용인 RE100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 제안

### 1) 3대 핵심전략

#### ○ 핵심전략-① : 산업단지 중심의 분산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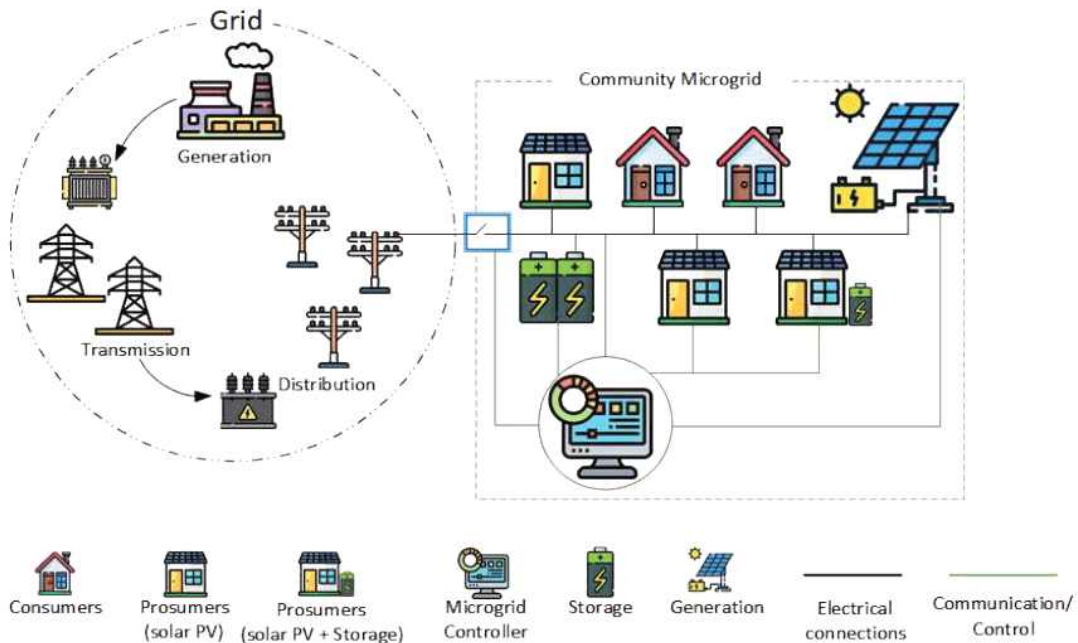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완공 시점에 10GW 이상이라는 막대한 전력 수요가 예상되며, 이는 경기도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준
-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력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단지 내부에서 생산-소비가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
-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RE100 달성이라는 기로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 실행 방안 마련을 제안
- 세부과제-① : 태양광·연료전지 통합형 단지계획 수립을 통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 주차장, 물류창고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고밀도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입주 조건이나 인허가 요건과 연계

- 세부과제-② : 반도체 제조공정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열병합형 연료전지를 클러스터 내 주요 기업에 분산 배치하고 폐열은 급탕이나 난방에 활용
- 세부과제-③ :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연계 및 스마트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낮 시간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 시간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고용량 ESS 설치를 장려하고, 모든 설비는 통합 EMS로 제어
- 세부과제-④ : 한전 계통망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체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설계를 통해 클러스터 단위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설계하고 일부 영역은 독립형 전력 운영 가능하도록 이중화

#### ○ 핵심전략-② : 시민 참여 기반 지역순환형 RE100 생태계 구축

- 용인시는 에너지 자립률이 약 0.31%로, 전국 평균 및 경기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과 지역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에너지 순환 시스템 구축 필요
-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사회적 기반이자, 지역 내 순환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므로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 실행 방안 마련을 제안
  - 세부과제-① : 경관형 태양광 프로젝트 확대를 위해 기흥호수, 시민체육센터 주차장, 마성리 교통광장과 같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경관형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고, 이를 지역 건축가·디자이너와 협업해 도시 미관과 연계
  - 세부과제-② : 시민펀딩 기반의 발전소 구축 모델 확산을 위해 ‘시민이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기반 발전소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전력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적립
  - 세부과제-③ :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학교, 도서관,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ESS와 연계된 소규모 마이크로그리드를 조성하고 잉여 전력은 인근 소상공인에 공급

## [지역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성 체계 예시]



출처 : Community of Practice Forum

- 세부과제-④ : 청년·시민 대상 에너지 교육 및 참여 플랫폼 운영을 통해 시민이 단 순 소비자가 아닌 RE100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교육, 모니터링, 인센티브 제공 체계 마련

### ○ 핵심전략-③ : 공공-민간 연계형 전력중개 및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 글로벌 시장은 재생에너지 단순 생산보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어떻게 소비하느냐를 핵심 경쟁력으로 간주
- 특히 글로벌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공급망 전체의 RE100 실현을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 또한 RE100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와 대비책 마련 필요
- 따라서 용인시가 공공-민간을 연계한 전력중개를 지원하고 전력 구매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 실행 방안 마련을 제안

- 세부과제-① : 지자체 주도 RE100 전력중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용인시가 중개자 역할을 맡아 재생에너지 생산자(소규모 태양광, 시민 협동조합 등)와 수요기업 간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를 중개하고 계약 이행을 보증

- 세부과제-② : 지역형 녹색전력 PPA 모델 개발을 통해 도심형 태양광, 연료 전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PPA 계약을 유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RE100 이행 실적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제공
- 세부과제-③ : 공공기관 및 반도체 공급망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RE100 전환을 의무화하여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과 공동 구매계약 체결 을 통해 지속 가능한 RE 전력거래 시장 구축
- 세부과제-④ : 전력중개사업자와 협업하여 RE100 전력의 수요-공급 거래 정보를 시각화하고 시장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거래 생태계 마련

## 7. 도시기획단 소식

### □ 2025년 경관·공공디자인 분야 실무 역량 강화 교육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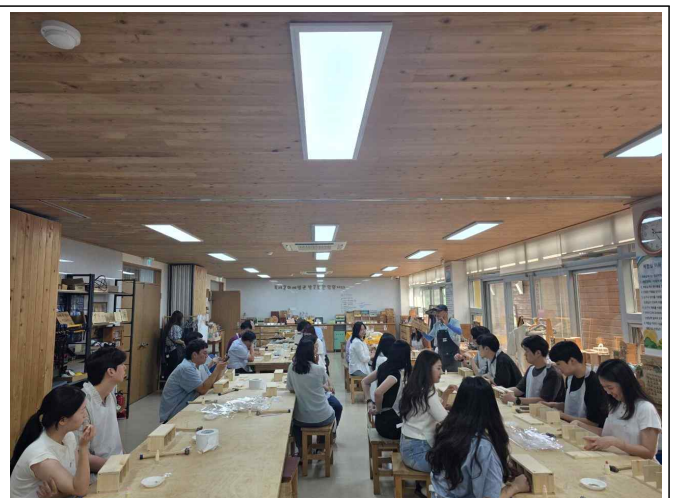
#### 1. 추진개요

- 교 육 명 : 2025년 경관·공공디자인 분야 실무 역량 강화 교육
- 교육일시 : 2025. 7. 4.(금) 09:30 ~ 17:10
- 교육대상(인원) : 경관관련업무 담당자 및 팀장 등 (30명)
- 장 소 : 용인 산림교육센터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96-11)
- 교육목적
  - 경관·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 2. 주요 교육내용

- 용인시 경관교육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
  - 경관계획의 역할 및 용인시 경관 현황 분석
- 도시와 색채 교육 (노루서울디자인스튜디오 김승현 소장)
  - 세계 주요 도시의 대표적인 색채 사례 공유
-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역할 교육 (명지대학교 채민규 교수)
  -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역할 및 용인시 경관·공공디자인의 문제점 제시

#### 3. 교육 사진





## □ 공공디자인팀 수상 2관왕,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사업부분 학회장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주관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사업 부문 '학회장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 시는 이번 대회에서 수해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디자인 개발·시범 설치 사업인 '2024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공모, 수상했다.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산책로와 수변공원을 찾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시설물, 비상대피 안내사인 등 표준디자인을 개발·적용하고자 진행됐다.
- 이를 위해 시는 하천산책로 등 현장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관련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디자인을 확정했다.
-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시설물을 일관성 있게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재난안전시설물의 시인성을 강화했다.
- 특히 이 사업으로 개발한 인명구조구명환(Turning Easy Cue) 디자인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5' 제품디자인 콘셉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디자인사업에 주력한 시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화롭고, 일관된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시는 2023년부터 공공디자인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령자의 인지감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인지건강디자인'을 개발해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 TurningEasyCue

Anyone can turn easily and life-saving (Rescue), TurningEasyCue!

### BEFORE: PROBLEM

Before using TCC, complicated process and hard to use.

1. Throw a Lifebuoy. 2. Turn the handle to rescue.

### AFTER: HOW TO USE

After using TCC, more intuitive and easier to use.

1. Throw a Lifebuoy. 2. Turn the handle to rescue.

### DRAWING

FRONT VIEW 720\*1100  
SIDE VIEW 440\*1100

### STRUCTURE FUNCTION

Using the safety principle, life-saving equipment for anyone to use.

**Average required Force by Age when using the existing lifebuoy**

| Age Group   | Adult (18+) | Senior (65+) | Child (10-17) | Infant (0-9) | Force used in the existing lifebuoy |
|-------------|-------------|--------------|---------------|--------------|-------------------------------------|
| Adult (18+) | 76.7kg      | 76.7kg       | 76.7kg        | 76.7kg       | $F = 76.7kg$                        |

The force required for the buoy and use of a single wheel is equal to the turn of the weight of a person and lifebuoy making it difficult for the weak, such as the elderly and children, to use.

**Forces used in TurningEasyCue**

| Force                                         | Value          |
|-----------------------------------------------|----------------|
| Large wheel and handle (outside)              | $r = 50mm$     |
| Small wheel (inside)                          | $R = 200mm$    |
| The rope from the small wheel to the lifebuoy | $w = 76.7kg$   |
| Small wheel radius                            | $r = 50mm$     |
| Large wheel radius                            | $R = 200mm$    |
| Lifebuoy and human weight (variable)          | $w = 76.7kg$   |
| Forces on TurningEasyCue                      | $F = 19.175kg$ |

**$r \times w = R \times F$**   
 **$F = \text{About } 19kg \text{ (19.175) SUITABLE!}$**

It takes about only **1/4** force compared to the force the existing one request!



## 8.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25. 6. 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I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 2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용인 삼가3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삼가동 71-2번지 일원<br>- 목 적 : 공동주택 760세대 건립                          | 조 건 부<br>수 용 | 도시개발과<br>(☎6193-3782) |
| 2  | ○ 용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4호) 토지적성평가 '다등급지 심의(안)<br>- 위 치 : 기흥구 마북동 102-25번지 일원<br>- 목 적 : 토지적성평가 '다등급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 결정 | 조 건 부<br>수 용 | 도시정비과<br>(☎6193-3693) |

#### II 제10회 도시계획(제2분과)위원회 : 2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공장신설승인(개발행위허가 의제) 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283-1번지 일원<br>- 목 적 : 공장 부지조성   | 조 건 부<br>수 용 | 기업지원과<br>(☎6193-3885)         |
| 2  | ○ 개발행위허가 심의(안)<br>- 위 치 : 기흥구 고매동 산34-4번지 일원<br>- 목 적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 부지조성 | 조 건 부<br>수 용 | 기흥구<br>도시건축1과<br>(☎6193-6510) |

## 25. 6. 2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I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 : 4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204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b>자문(안)</b><br>- 주요내용<br>· 도시미래상 제시, 계획인구 등 주요 지표 설정<br>·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br>·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 <b>재 자 문</b>         | 도시정책과<br>(☎6193-3692) |
| 2-3 | ○ 개발행위허가 심의(안)_일괄상정<br>- 위 치 : ①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산65번지 일원<br>②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산69-7번지 일원<br>- 목 적 : 묘지관련시설(자연장지) 부지조성    | <b>재 심 의</b>         | 도시개발과<br>(☎6193-3781) |
| 4   | ○ 개발행위허가 심의(안)<br>- 위 치 : 기흥구 신갈동 산49-2번지 일원<br>- 목 적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부지조성                                          | <b>조 건 부<br/>수 용</b> | 도시개발과<br>(☎6193-3781) |

### II 제11회 도시계획(제2분과)위원회 : 3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2 |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b>자문(안)_일괄상정</b><br>- 위 치 :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br>① 625-1번지 일원 ② 629번지 일원<br>- 목 적<br>① 제1·2종 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수리점,사무소) 부지조성<br>② 제1·2종 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수리점,사무소,인터넷<br>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지조성 | <b>자 의 제<br/>문 견 시</b> | 도시개발과<br>(☎6193-3781)         |
| 3   |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b>자문(안)</b><br>- 위 치 :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109-1번지 일원<br>- 목 적 : 묘지 관련 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br>및 장례시설(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부지조성                                                       | <b>자 의 제<br/>문 견 시</b> | 처인구<br>도시건축2과<br>(☎6193-5515) |

## '25. 7. 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I 제4회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 1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역북동 89-18번지 일원<br>- 목 적 : 공동주택 944세대 건립 | 조 건 부<br>수 용 | 도시개발과<br>(☎6193-3782) |

### II 제11회 도시계획위원회 : 1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개발행위허가 심의(안)<br>- 위 치 : 기흥구 고매동 340-1번지 일원<br>- 목 적 :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부지조성 | 재 심 의 | 도시개발과<br>(☎6193-3781) |

### III 제12회 도시계획[제2분과]위원회 : 4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재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316-1번지 일원<br>- 목 적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부지조성             | 조 건 부<br>수 용 | 처인구<br>도시건축1과<br>(☎6193-5510) |
| 2  |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재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144번지 일원<br>- 목 적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 종교시설(종교집회장) 부지조성 | 원 안<br>수 용   | 처인구<br>도시건축2과<br>(☎6193-5515) |
| 3  | ○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 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547-2번지 일원<br>- 목 적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사무소, 일반음식점) 부지조성    | 조 건 부<br>수 용 | 처인구<br>도시건축2과<br>(☎6193-5515) |
| 4  | ○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 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남사읍 방이리 258번지 일원<br>- 목 적 : 단독주택 및 도로 부지조성                        | 조 건 부<br>수 용 | 처인구<br>도시건축2과<br>(☎6193-5515) |



## '25. 7. 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I 제1회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 1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204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b>자문(안)</b><br>- 주요내용<br>· 도시미래상 제시, 계획인구 등 주요 지표 설정<br>·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 <b>재 자 문</b> | 도시정책과<br>(☎6193-3692) |

## 25. 7. 2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I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 6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204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b>자문(안)</b><br>- 주요내용<br>· 도시미래상 제시, 계획인구 등 주요 지표 설정<br>·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 <b>자의제</b><br><b>문견시</b>              | 도시정책과<br>(☎6193-3692) |
| 2  | ○ 용인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심의(안)<br>- 위 치 : 수지구 동천동 산151-2번지 일원<br>- 목 적 : 공동주택 906세대 건립                                        | <b>원수</b><br><b>안용</b>                | 도시개발과<br>(☎6193-3783) |
| 3  | ○ 처인구역(공신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b>재심의(안)</b><br>- 위 치 : 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br>- 목 적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b>조수</b><br><b>부용</b>                | 주택정비과<br>(☎6193-3796) |
| 4  | ○ 개발행위허가 심의(안)<br>- 위 치 : 기흥구 지곡동 135번지 일원<br>- 목 적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부지증설                                                          | <b>조수</b><br><b>부용</b>                | 도시개발과<br>(☎6193-3781) |
| 5  |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심의 및 <b>자문(안)</b><br>- 위 치 : 기흥구 고매동 420-2번지 일원<br>- 목 적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부지조성                                | <b>원수</b><br><b>자의제</b><br><b>문견시</b> | 도시개발과<br>(☎6193-3781) |
| 6  |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남사읍 봉무리 133-1번지 일원<br>- 목 적 : 제1, 2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조업소, 사무소) 부지조성<br>→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부지조성 | <b>조수</b><br><b>부용</b>                | 도시개발과<br>(☎6193-3780) |

### II 제13회 도시계획(제2분과)위원회 : 3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112-1번지 일원<br>- 목 적 : 공동주택(임대형 기숙사) 및 도로 부지조성 | <b>재 심 의</b>           | 도시개발과<br>(☎6193-3781)             |
| 2  |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역북동 256-16번지 일원<br>- 목 적 : 단독주택(단독주택) 및 도로 부지조성       | <b>원수</b><br><b>안용</b> | 처인구<br>도시건축<br>1과<br>(☎6193-5510) |
| 3  | ○ 개발행위허가 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1622번지 일원<br>- 목 적 : 동식물관련시설(농업용고정온실) 내 토지형질변경(포장)     | <b>원수</b><br><b>안용</b> | 처인구<br>도시건축<br>2과<br>(☎6193-5515) |

## 25. 8. 1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I 제13회 도시계획위원회 : 1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243-2번지<br>- 목 적 : 문화 및 집회시설(사찰) 및 종교시설(종교시설, 사찰-위패보관소) 부지 증설 | 조 건 부<br>수 용 | 도시개발과<br>(☎6193-3781) |

### II 제14회 도시계획[제2분과]위원회 : 3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산업단지 외의 준용사업(전력공급시설) 실시계획변경<br>(개발행위허가 의제) <b>재심의(안)</b><br>- 위 치 :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782-1번지<br>- 목 적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인입 전기공급시설 설치 | 원 수<br>안 용        | 반도체<br>일반산업단과<br>(☎6193-2813) |
| 2  | ○ 개발행위허가 심의(안)<br>- 위 치 : 기흥구 보라동 459-8번지<br>- 목 적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제1, 2종 근생 부지 증설                                           | 원 수<br>안 용        | 기흥구<br>도시건축1과<br>(☎6193-6510) |
| 3  |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b>자문(안)</b><br>- 위 치 :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34-36번지<br>- 목 적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도로                                       | 자 의<br>문 건<br>제 시 | 처인구<br>도시건축1과<br>(☎6193-5510) |

## 25. 8. 2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I 제14회 도시계획위원회 : 5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용인시 토지적성평가 심의(안)<br>- 평가대상 : 비시가화지역 전역<br>- 주요내용 :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 결정                                                     | 원수<br>안용  | 도시정책과<br>(☎6193-3692)        |
| 2  | ○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3-A호, 소로 1-B호) 결정 심의(안)<br>- 위 치 : 기흥구 연남동 18-20번지 일원<br>- 목 적 : 중로 3-A호, 소로 1-B호 신설                      | 조건부<br>수용 | 도시정비과<br>(☎6193-3693)        |
| 3  | ○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수지소로 2-79호) 변경 결정 심의(안)<br>- 위 치 : 수지구 풍덕천동 974번지 일원<br>- 목 적 : 지적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도로선형 조정                       | 원수<br>안용  | 도시정비과<br>(☎6193-3693)        |
| 4  | ○ 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7호(폐지), 연구시설·도로] 변경 결정 입안 <b>자문</b> (안)<br>- 위 치 : 기흥구 고매동 279-13번지 일원<br>- 목 적 : 체육시설 7호 폐지, 연구시설 및 도로 신설 | 자의제       | 문견시<br>도시정비과<br>(☎6193-3693) |
| 5  | ○ 개발행위허가 심의(안)<br>- 위 치 :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181번지 일원<br>- 목 적 : 발전시설(공작물 -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 조건부<br>수용 | 도시개발과<br>(☎6193-3781)        |

### II 제15회 도시계획[제2분과]위원회 : 4건

| 연번 | 안 건 명                                                                                                           | 결 과      | 담당부서                                 |
|----|-----------------------------------------------------------------------------------------------------------------|----------|--------------------------------------|
| 1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심의(안)<br>- 위 치 : 기흥구 신갈동 315-2번지 일원<br>- 목 적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 원수<br>안용 | 기흥구<br>도시건축1과<br>(☎6193-6461)        |
| 2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심의(안)<br>- 위 치 : 기흥구 신갈동 315-4번지 일원<br>- 목 적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 원수<br>안용 |                                      |
| 3  |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b>재심의</b> (안)<br>- 위 치 :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112-1번지 일원<br>- 목 적 :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및 도로 부지 조성           | 재심의      | 도시개발과<br>(☎6193-3781)                |
| 4  |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b>자문</b> (안)<br>- 위 치 :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29-64번지<br>- 목 적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방송통신 시설(촬영소) | 자의제      | 문견시<br>처인구<br>도시건축1과<br>(☎6193-5510) |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lst.jsp](https://www.molit.go.kr/USR/NEWS/m_71/lst.jsp))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https://www.krihs.re.kr/krihsLibraryReport/briefListes?mid=a101030500008&pub\\_kind=BR\\_1](https://www.krihs.re.kr/krihsLibraryReport/briefListes?mid=a101030500008&pub_kind=BR_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경기도 뉴스포털 보도자료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do](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do))  
용인시청 언론보도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020](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020))  
용인시청 용인사진관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242](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242))  
용인시정연구원 YRI Insight ([https://www.yongin.re.kr/lmth/01\\_data06.asp?center=6](https://www.yongin.re.kr/lmth/01_data06.asp?center=6))

※ 도시정책 관련 보도자료를 기초로 편집한 소식지임



## 도 시 정 책 소 식 지

■ 2025년 9월 발행

■ 발 행 : 용인시 도시기획단

도시기획단장 김대홍

도시기획팀장 김윤희

주무관 김도성, 김지훈, 안정선